
2010년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

2010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에 즈음하여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도는 '08. 9. 1.부터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의 7.5%에 해당되는 1,7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도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의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재와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발주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원가자문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설계원가심사 서비스를 특주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의 시군 확대 시행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제정, 전담인력 배치, 실무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하반기부터는 시군에서도 계약심사 업무가 일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제도가 최종 「예산 지킴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 원가심사 기법개발과 심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 추진성과와 분야별 주요 심사 내용을 수록한 본 사례집이 사업발주 부서의 설계서 작성 지침서로 활용되고, 우리 도 전체 공직자들의 원가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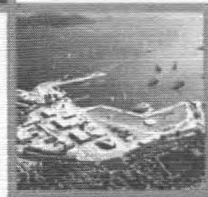
2010년 9월

목 차

I. 계약심사제도 운영	1
1. 기본 방침	3
2. 운영 근거	3
3. 추진 경 위	4
4. 운영 개요	4
II. 계약심사 추진성과	7
1. 총 괄	9
2. 사업분야별 추진실적	10
3. 대상기관별 추진실적	12
I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5
1. 토 목 공 사	17
2. 건 축 공 사	81
3. 기계설비·전기공사	103
4. 일 반 용 역	123
5. 물품제작·구입	149
6. 2009(상반기) 주요심사	163
7. 2008(하반기) 주요심사	185
IV. 부 록	203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05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218
3.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265

I

계약심사제도 운영



1 기본 방침

-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 입찰 및 계약 이행시 원가 적정성 검토,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지방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
 - 계약심사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절약 분위기 조성

2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재무회계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용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행안부, '08.7.29, '10.5.14)
-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008.10.10 시행)

3 추진경위

- 2008. 3. 10 시도별 계약심사 조직설치 계획시달(행정안전부)
- 2008. 7. 15 전라남도 계약심사 기구 설치(2개 담당, 9명)
- 2008. 9. 1 도 계약심사 업무 시행
- 2008. 10. 10 전라남도 계약심사 규칙 제정 공포
- 2008. 12. 26 전라남도 원가분석자문단 구성 운영
- 2010. 5. 14 시군 계약심사제도 추진지침 시달(행정안전부)
- 2010. 7. 1 시군 계약심사 확대 시행

4 운영개요

□ 심사대상 기관(부서)

【 道 】

- 도 본청 실과,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 전남개발공사,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 (재)전남여성플라자 등 8개 출연기관 (50%이상 출연)

【市·郡】⇒ 국·도비 보조 사업에 한함.

- 시군 본청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 제외)

□ 심사 내용별 대상사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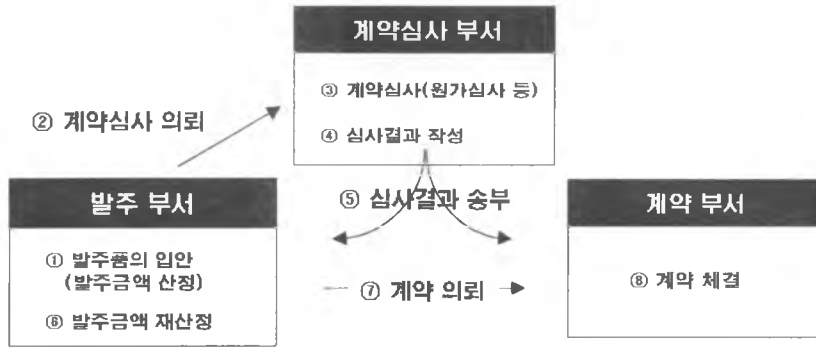
구분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 고
공 사	원가심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한함
	저가심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 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	
용 역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 품 제작·구입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세

□ 심사제의 대상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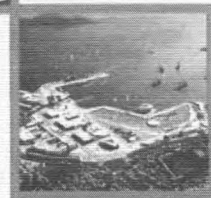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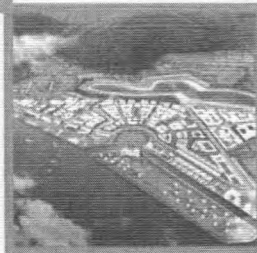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한 10일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심사부서 → 발주부서)
③ 심 사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업무 담당자 → 구매 · 공사심사 담당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세무회계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II

계약심사 추진성과



1 총괄

총 1,273건 23,372억원 심사, 1,747억원 절감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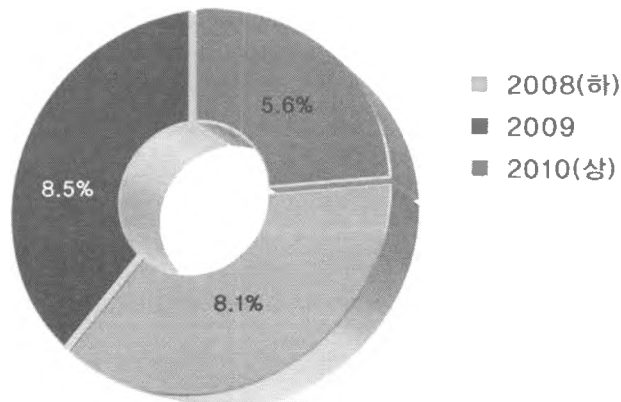
- ◇ 절감액 분석 : 공사 1,557억원 > 용역 169억원 > 구매 19억원 順
- ◇ 절감률 비교 : 구매 10.6% > 공사 7.6% > 용역 6.2% 順
- ◇ 기관별 처리량 : 시군 933건 > 도 본청 274건 > 공기업 66건 順
- ◇ 평균 처리기간 : 구매 3일 > 용역 3.5일 > 공사 4일 順

□ 연도별 실적 및 절감 현황 ('08.9.1 ~ '10.6.30)

(단위: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1,273	2,337,206	2,162,482	174,723	7.5%	
2008	206	362,245	332,779	29,466	8.1%	
2009	603	1,192,892	1,091,595	101,297	8.5%	
2010	464	782,069	738,108	43,960	5.6%	

계약심사 절감액



2 사업분야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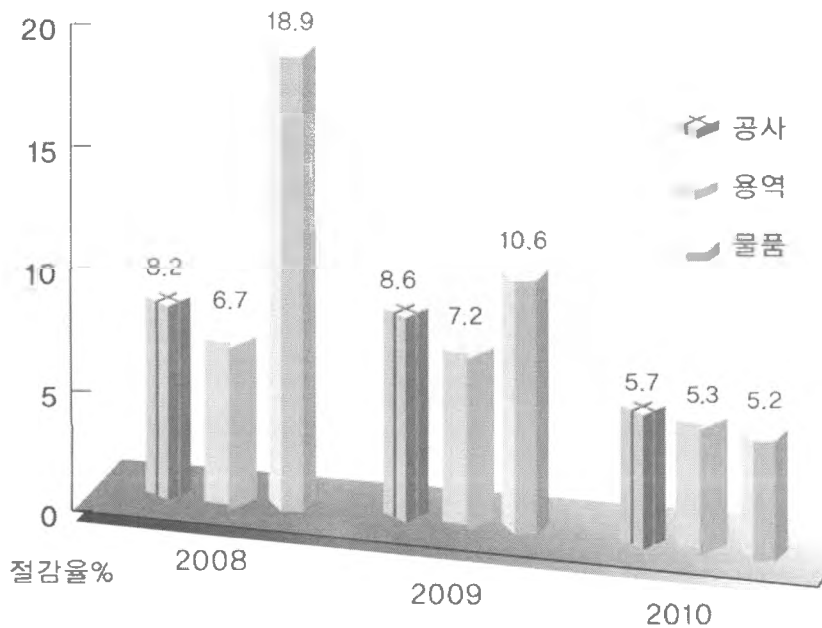
□ 총괄

(2008.9.1 ~ 2010. 6.30)

(단위 : 백만원)

구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계	1,273	2,337,206	2,162,482	174,723	7.5%	
공사	870	2,045,887	1,890,125	155,762	7.6%	
용역	275	272,659	255,668	16,991	6.2%	
물품	128	18,659	16,689	1,970	10.6%	

분야별 절감률



□ 2008년 실적

(2008.9.1 ~ 2008.12.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206	362,245	332,779	29,466	8.1%	
공사	140	321,934	295,478	26,456	8.2%	
용역	43	37,790	35,256	2,534	6.7%	
물품	23	2,521	2,045	476	18.9%	

□ 2009년 실적

(2009.1.1 ~ 2009.12.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603	1,192,892	1,091,595	101,297	8.5%	
공사	419	1,075,579	983,122	92,457	8.6%	
용역	112	105,060	97,513	7,547	7.2%	
물품	72	12,253	10,960	1,293	10.6%	

□ 2010년 실적

(2010.1.1 ~ 2010. 6.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464	782,069	738,108	43,960	5.6%	
공사	311	648,374	611,525	36,849	5.7%	
용역	120	129,809	122,899	6,910	5.3%	
물품	33	3,885	3,684	201	5.2%	

3 대상기관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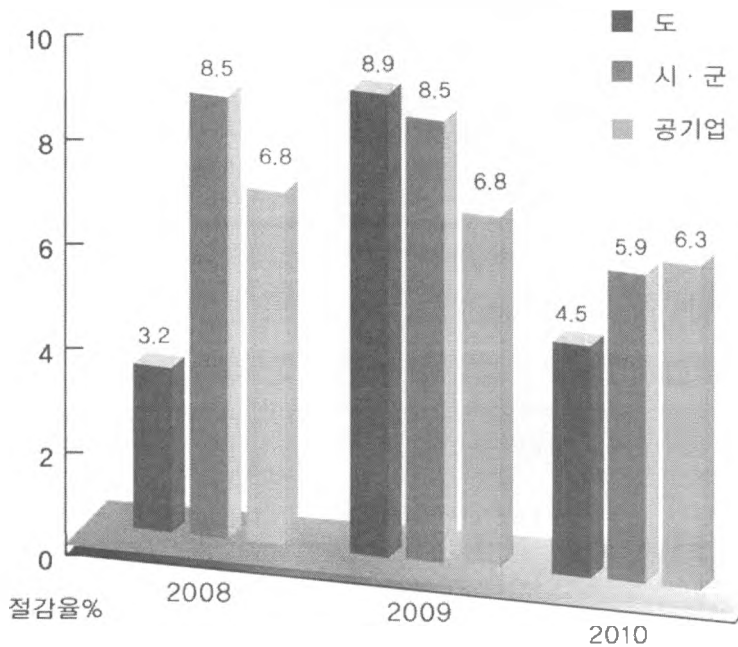
□ 총괄

(2008.9.1 ~ 2010.6.30)

(단위 : 백만원)

구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률	비고
계	1,273	2,337,206	2,162,482	174,723	7.5%	
도	274	408,812	382,012	26,800	6.6%	
시군	933	1,795,946	1,656,558	139,389	7.8%	
지방공기업	66	132,448	123,913	8,535	6.4%	

기관별 절감율



□ 2008년 실적

(2008.9.1 ~ 2008.12.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206	362,245	332,779	29,466	8.1%	
도	42	21,675	20,972	703	3.2%	
시군	153	333,824	305,374	28,450	8.5%	
지방공기업	11	6,746	6,433	313	6.8%	

□ 2009년 실적

(2009.1.1 ~ 2009.12.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603	1,192,892	1,091,595	101,297	8.5%	
도	131	198,660	181,058	17,602	8.9%	
시군	437	931,654	852,231	79,423	8.5%	
지방공기업	35	62,578	58,306	4,272	6.8%	

□ 2010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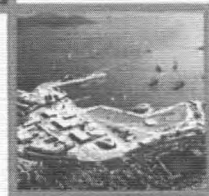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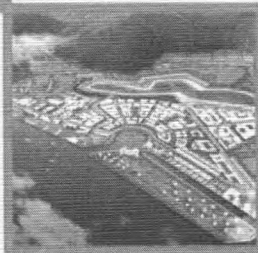
(2010.1.1 ~ 201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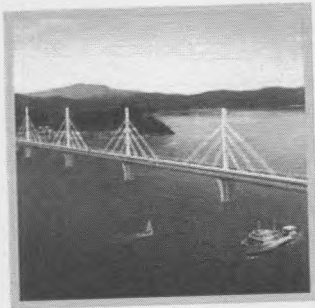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 감 률	비 고
계	464	782,069	738,108	43,960	5.6%	
도	101	188,477	179,982	8,495	4.5%	
시군	343	530,468	498,953	31,516	5.9%	
지방공기업	20	63,124	59,174	3,950	6.3%	

Ⅲ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목 차

- 주거환경 개선사업 (P 19)
- 도시숲 조성사업 (P 21)
-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P 23)
- 전원 마을 조성공사 (P 25)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P 27)
- 하수관거 정비공사 (P 29)
- 교량 가설공사 (P 31)
-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P 33)
-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P 35)
-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P 37)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P 39)
-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공사 (P 41)
-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P 43)
- 방조제 개보수 사업 (P 45)
- 농공단지 조성사업 (P 47)
- 관광지 이벤트 조성사업 (P 49)
- 지방 상수도 개설 공사 (P 5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P 53)
- 경관단지 조성사업 (P 55)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P 56)
- 소하천 정비사업 (P 58)
- 도로 확포장 공사 (P 60)
-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공사 (P 61)
- 연안정비사업 (P 62)
- 00 생활환경 정비사업 (P 63)
- 00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P 65)
- 00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P 66)
- 00~00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P 68)
- 농공단지 조성사업 (P 70)
-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공사 (P 72)
- 00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P 74)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P 76)
- 00 용수공급 시설공사 (P 78)
- 방파제 시설공사 (P 80)

【토목공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7.
- 사업규모
 - 목 적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규 모 : L = 982m, B = 10m, 주차장 2개소(A=1,481㎡),
공공용지 2개소(A=743㎡)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50,940		1,137,760	113,180	9.0%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 기계경비 조합비 조정
 - 인력10%+기계90%(2,131원/㎡) → 기계100%(961원/㎡)
- 유로폼 조립 및 해체품 조정
 - 보통인부 0.054인/㎡ → 0.045인/㎡
 - 형틀목공 0.103인/㎡ → 0.096인/㎡
- 원형거푸집 설치품 조정
 - 보통인부 0.42인/㎡ → 0.25인/㎡
 - 형틀목공 0.62인/㎡ → 0.54인/㎡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내충격 수도관 절단 : 지상절단 가능으로 20% 감

- 75mm : 10,992원/개소 → 8,794원/개소
- 100mm : 13,923원/개소 → 11,139원/개소
- 150mm : 17,588원/개소 → 14,070원/개소

평 파고라 설치비 삭제

- 설치비 이중계상

체육시설, 쇄석단가 조정

- 실 거래가격 조사(지역업체 견적 처리)

부대공 운반 경비로 조정

- 재료비+노무비+경비 → 경비
- ※근거 : 예정가격 작성기준

조경수목 자재단가 조정

- 은행나무 400,000원/주 → 291,818원/주 등 4종 단가 조정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정 : 44,312천원

- 맨홀뚜껑(부양식) 67조, PE 오수받이(악취 차단용) 98조

주요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적용장비와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 공사현장 여건 적정한 적용여부

[토목공사]

도시숲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7.
- 사업규모
 - 목 적 : 도시숲 조성사업
 - 규 모 : 사업면적 36,870m²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50,940		1,250,940	1,250,940	10.6%

주요 심사내용

- 동백나무 식재품 조정
 - 조경공 0.81인/주 → 0.20인/주
 - 보통인부 0.39인/주 → 0.10인/주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자연석 쌓기품 조정
 - 자연석 쌓기 → 전석 쌓기
- 콘크리트 타설 품 조정
 - 무근 : 보통인부 0.27인 → 0.15인, 콘크리트공 0.15 → 0.12인
 - 철근 : 보통인부 0.29인 → 0.16인, 콘크리트공 0.17 → 0.14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재단가 조정

- 점토벽돌(230×114×60) : 물가자료 반영
- 레미콘(40-180-08) : 부가가치세 이중계상
- 이형철근(D13) : 조달단가 반영
 - 1,060,000원/ton → 796,851원/ton(△263,149원/ton)
- 때값 : 조달단가 반영

현장시설공 경비로 조정

- 재료비+노무비+경비 → 경비
- ※ 근거 : 예정가격 작성기준

사급자재 관급자재로 조정 : 55,941천원(지역제품 반영)

- 폴리우레탄(714m²) : 30,702천 원(42,900원/ m²→43,000원/ m²)
- 황토포장(870m²) : 25,239천 원(38,769원/ m²→29,000원/ m²)

주요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을 비교 검토

【토목공사】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목 적 : 주차장 조성사업
 - 규 모 : 주차장 조성공사 1식, 조경석 쌓기 467m²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00,890		700,890	700,890	14.7%

주요 심사내용

- 조경석 쌓기품 조정
 - 조경석 쌓기 → 전석 쌓기
- 조경 수목 자재 단가 조정
 - 느티나무 543,000원/주 → 401,818원/주 등 4종 단가 조정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 환경보전비 조정
 -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세류시설이 설계반영되어 환경보전비 감액
 - ※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녹지대폐 품 조정
 - 먼고르기, 작업반장 품 삭제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PE원형 맨홀 거푸집 수량 및 품 조정

- 특별인부 0.52인 → 0.26인 - 수량 : 1.666EX → 1조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난간 단가 조정(지역업체 견적)

- 66,608천원 → 49,000천원(△17,608천원)

주요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을 비교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전원 마을 조성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0.
- 사업규모
 - 목 적 : 전원마을 조성사업
 - 규 모 : 토공, 구조물, 상수도(L=1,434m), 우·오수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611,480		2,257,740	353,740	13.5%

주요 심사내용

- 발파암 깎기 작업내용 조정
 - 대형브레이커+백호(1.0m³) → 흙깎기(중규모진동 제어발파)
 - 흙깎기(일반발파) → 흙깎기(중규모진동 제어발파)
 - ※ 근거 : 현장여건
- 측구 터파기(리핑암) 깨기 일작업량 조정
 - Q=3.5m³/hr → Q=3.8m³/hr
- 터파기(토사, 연암) 기계경비 단가산출 조정
 - 인력10%+기계90% → 기계100%

전석쌓기 작업내용 조정

- 선별 · 집석+적재+운반+쌓기 → 적재+운반+쌓기

주요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을 비교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적용장비와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 공사현장 여건 적정한 적용여부

【토목공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 적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규 모 : 조수량 177,010m³, 유역면적 83ha, 수혜면적 47ha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733,880		3,309,460	424,420	11.4%

주요 심사내용

- 환경보전비 조정
 -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세륜시설이 설계반영되어 환경보전비 감액
 - ※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조경 수목 자재 단가 조정
 - 느티나무 543,000원/주 → 401,818원/주 등 4종 단가 조정
 - 30,480천원 → 24,981천원(△5,499천원)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 녹지대 조성 품 조정
 - 먼고르기, 작업반장 품 삭제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PE원형 맨홀 거푸집 수량 및 품 조정

- 특별인부 0.52인 → 0.26인 - 수량 : 1.666EX → 1조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난간 단가 조정(지역업체 견적)

- 66,608천원 → 49,000천원(△17,608천원)

주요 착안사항

- 공사금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하여 조달가격과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을 비교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개요

- ① 요청기관 : 0 0 시
- ② 심 사 일 : 2009. 7.
- ③ 사업규모
 - 목 적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규 모 : 오수 37km, 우수 1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903,394		6,931,650	971,744	12.3%

주요 심사내용

- ①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굴삭기 규격 및 사용시간 조정
 - 굴삭기 0.4m³급 → 굴삭기 0.7m³급
 - 연간공용일수 150일 → 200일
- ② 터파기(굴삭기 0.7m³급) 조정
 - 인력10%+기계90% → 기계100%
- ③ 펌프장 터파기 굴착방법 조정
 - 수중터파기 → 용수터파기
- ④ 재택관로 포장깨기 방법 조정 : 소형100% → 소형50%+대형50%
 - (인력+소형브레카) 50% + (굴삭기 0.2m³급+대형브레카) 50%

추진공내 장비조립 및 해체 회수 조정 : 5회 → 1회

H-BEAM(H=9 ~ 11.0m) 일 작업량 조정

- 설치 : 10.91본/일 → 13.09본/일(△18,346원/본)
- 철거 : 14.40본/일 → 17.28본/일(△10,006원/본)

H-BEAM 설치(H=15 ~ 18.0m) 일 작업량 조정

- 설치 : 7.29본/일 → 8.75본/일(△26,522원/본)
- 철거 : 11.67본/일 → 14.00본/일(△12,267원/본)

맨홀뚜껑 설치비 조정

- 보통인부 0.3인 → 재료비의 5%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교량 가설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7.
- 사업규모
 - 목 적 : 교량 가설공사
 - 규 모 : L=98m, B=6.5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074,780		1,930,200	144,580	7.0%

주요 심사내용

- 흙관접합 및 부설 설치품 조정 : D600
 - 배관공(수도) → 배관공
- 파형강관접합 및 부설(D200)
 - 배관공(수도) → 배관공
- 이중벽 PE관접합 및 부설(D200)
 - 배관공(수도) → 배관공
- 철근가공 및 조립 방법 조정
 - 현장가공 + 현장조립 → 공장가공 + 현장조립

● 신축이음 부분 거푸집 삭제

- 철·성토부 L형측구 : 3,570원/개소 → 1,428원/개소(△2,142원)

● 가물막이 방법 조정 : PP마대 → 톤마대(표준품셈 5-3 항)

- 만들기 61개 → 49개, 쌓기 및 헐기 136개 → 71개

● 가물막이 배수처리 방법 조정

- 흙관(D1000) → 파형강관(D600)

● PVC 전선관 수정 : 국도건설 공사 설계실무

- 배관공, 보통인부 → 삭제, 설치비 재료비의 5%로 계상

● 강재거푸집 제작품 조정 : 건축표준품셈 15-6

- 잡철물제작 복잡 → 보통, 비계공 삭제

● 강재거푸집 운반거리 조정 : 200km(군포) → 40km(광주)

- 비계공 4인 → 2인, 보통인부 2인 → 1인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공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09. 8.
- ✓ 사업규모
 - 목 적 : 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 규 모 : 운동장 조성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074,780		1,930,200	144,580	7.0%

주요 심사내용

- ✓ 막구조 천막지주 설치 수량 조정 : 6.366톤 → 5.955톤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 및 고장력 볼트조임 수량 할증 제외
 - 막구조 철골세우기 수량 삭제
 - 앵커볼트 수량 조정 : 34EA → 32EA
- ✓ 사각맨홀 사다리 설치 수량조정
 - 1호형 : 5 개소 → 3 개소
 - 2호형 : 9 개소 → 5 개소
- ✓ PE이중벽관 집합 및 부설 품 조정
 - 배관공(수도) → 배관공

제수변 접합 및 부설(D100mm) 기계품 조정

- 배관공(수도) 0.24인→배관공 0.02인, 보통인부 0.24인→0.02인
- 112,797원/개소 → 72,346원/개소(△40,451원/개소)

제수변 접합 및 부설(D75mm) 인력품 조정

- 배관공(수도) 0.75인→배관공 0.63인, 보통인부 0.99인→0.87인

제수변 보호통(D100mm) 합판거푸집 품 조정 : 4회 → 6회

지수변 보호통(D50mm) 합판거푸집 품 조정 : 4회 → 6회

소화전 설치 품 조정 : 레미콘타설(소형) → 레미콘타설(무근)

도로경계석 설치 품 조정 : 표준품셈 12-5-3

- 특별인부 0.05 → 0.0167인, 보통인부 0.07 → 0.0083인

환경보전비용 : 세륜시설 설치비용 설계반영으로 이중계상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목 적 : 하수도정비
 - 규 모 : 오수관 3.3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20,010		899,580	20,430	2.2%

주요 심사내용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노임단가 조정
 - 배관공(수도) 114,758원 → 배관공 87,312원
- PE새들분기관 접합 노임단가 조정
 - 배관공(수도) 114,758원 → 배관공 87,312원
- 기성맨홀설치(D1200) 품 조정 : 표준품셈 6-8-3
 - 보통인부 1.55인/개소 → 1.22인/개소
- 강관동바리(3개월사용) 품 조정 : 표준품셈 2-5-1
 - 형틀목공 : 0.07인 공/m³ → 0.06인 공/m³
 - 보통인부 : 0.05인 공/m³ → 0.03인 공/m³

철근가공 및 조립(복잡)품 조정 : 표준품셈 6-2-1

- 기구손료 조정 : 가공 및 조립 노무비 2% → 가공노무비 2%

풀(소형)맨홀설치(H=1.1) 사다리 수량조정

- 사다리제작설치 : 5/개소 → 0/개소

맨홀뚜껑 설치품 조정

- 보통인부 0.24인/조 → 재료비의 5%/조

관로 터파기(토사) 작업방법 조정 : 굴삭기 0.7㎡급

- 기계 90% + 인력 10% → 기계 100%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목 적 : 하수도 정비
 - 규 모 : 오수처리시설 40톤/일, 배수관 6.4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83,100		371,074	12,026	3.1%

주요 심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품 조정 : 표준품셈 12-3-2
 - 와이어메쉬, 양생비닐 설치품 제외
- 강관 동바리 인력품 조정 : 표준품셈 2-5-1
 - 방수공 0.07인 → 0.06인, 보통인부 0.05인 → 0.03인
- 비계설치 인력품 조정 : 표준품셈 2-6-1 준용
 - 방수공 0.1인 → 0.08인
- 레미콘타설(소형) 인력품 조정 : 표준품셈 6-1-1
 - 보통인부 0.42인 → 0.3인
 - 52,764원/㎡ → 44,525원/㎡(△8,239원/㎡)

시멘트 액체방수품 조정 : 표준품셈 13-7-2

- 방수공 0.11인 → 0.07인, 보통인부 0.08인 → 0.04인

구역화물 오기수량 조정

- 48.309ton → 14.827ton, 457,148원 → 140,307원

현장시설공 : 경비로 적용

표층 아스콘포설 및 다짐 표준품셈 조정 : 표준품셈 12-3

콘크리트 펌프카타설 인력품 조정 : 표준품셈 6-1-2

- 콘크리트공 0.07인 → 0.049인, 보통인부 0.05인 → 0.024인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목 적 :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사업
 - 규 모 : $V=20,000\text{m}^3$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225,530		1,8436,897	381,633	17.1%

주요 심사내용

- 환경보전비 삭제
 - 세륜세차시설 및 환경저감시설 EGI 웬스 적용으로 삭제
- 일반관리비 적용요율 조정
 - 토목공사 50억미만 적용 : 5.5% → 5.0%
- 저류지 바닥고르기 수량 조정
 - 바닥고르기물탈 → 콘크리트포장
- 도막 방수품 조정 : 표준품셈 13-5
 - 방수공 0.08 → 0.06인, 보통인부 0.12 → 0.03인
- 펌프장 철근콘크리트 타설 수량 조정
 - 펌프카 타설 $1,232\text{m}^3 \rightarrow 880\text{m}^3 (\Delta 352\text{m}^3)$

식재 수종 조정 : 기술심의위원회 의견

- 왕벚꽃나무 340주 → 덩굴장미 340주

운반비 및 세륜세차시설 : 경비로 수정

자연식생매트 설치품 조정 : 살포비 삭제

사토운반(토사)품 조정

- 적사후 적재운반 → 적사 삭제(터파기 적재)

메쉬웬스 자재비 조정 : 견적

- 볼트식(H=1.8m) : 84,088원/m → 50,866원/m
- 매립식(H=1.8m) : 73,886원/m → 40,701원/m
- 출입문(W=4.0 H=1.8m) : 975,744원/개소 → 864,567원/개소
- 출입문(W=2.0 H=1.8m) : 685,570원/개소 → 336,110원/개소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목 적 :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 규 모 : 매립 850m², 처리용양 3,000m³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63,523	1,089,450	174,073	13.0%

주요 심사내용

- 환경보전비 삭제
 - 환경저감시설(EGI 웬스) 적용으로 중복
- 벤토나이트 매트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5-16
 - 보통인부 0.085인 → 0.0085인
- HDPE SHEET 및 지오킴포지트 포선품 조정 : 표준품셈 5-16
 - 보통인부 0.085인 → 0.0085인
- 철근가공 및 조립(간단)품 조정 : 표준품셈 6-2-1
 - 기구손료 : 노무비의 2% → 가공노무비의 2%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품 조정 : 표준품셈 6-1-1
 - 콘크리트공 0.15인 → 0.12인, 보통인부 0.27인 → 0.15인

▶ **잡철물제작설치(간단)품 조정 : 표준품셈 건축 15-6**

- 철공 27.65인 → 철판공 27.65인

▶ **석축쌓기 조정**

- 깬잡석 사급구입 → 현장유용(기존석축)

▶ **깬잡석(T=35cm) 운반거리 조정 : 현장유용**

- 운반거리 200km → 삭제, 해상운반비 삭제

▶ **잡석채집 운반(뒷채움잡석)조정 : 현장채집 → 사급구입**

- 적재(인력) 삭제, 운반 1km → 5km

▶ **자재단가 조정**

- 돌망태 41,000원/㎡ → 돌망태(PVC코팅) 14,500원/㎡
- 내부코너패널 17,300원/매 → 17,000원/매(△300원/매)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관광지 기반 시설 조성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목 적 :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 규 모 : 진입로 415m, 산책로 1,160m, 전망대 158m²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33,0000		2,202,134	330,866	13.1%

주요 심사내용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품 조정
 - 배관공(수도) → 배관공
- 강관비계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2-6-1
 - 비계공 0.1인 → 0.08인
- 도로경계석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12-5-3
 - 특별인부 0.05인 → 0.027인, 보통인부 0.07인 → 0.009인
- 보차도 경계석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12-5-3
 - 특별인부 0.089인 → 0.0375인, 보통인부 0.03인 → 0.0125인
- 레미콘타설(무근)품 조정 : 표준품셈 6-1-1
 - 콘크리트공 0.15인 → 0.12인, 보통인부 0.27인 → 0.15인

- ④ 맨홀뚜껑설치품 조정 : 보통인부 0.24인 → 재료비의 5%
- ④ 비닐깔기 설치비 삭제 : 포장비용에 반영되어 중복계상
- ④ 사각맨홀(상수도) 설치품 조정
 - 레미콘타설 기계 → 레미콘타설 일반
- ④ 소형고압블럭 포장품 조정 : 표준품셈 12-3-3
 - 특별인부 0.031인 → 0.0067인, 보통인부 0.092인 → 0.013인
- ④ 흙관접합 및 부설 설치품 조정 : 몰탈 중복으로 삭제
- ④ 관로 되메우기 장비 조합비 조정
 - 인력 80% + 기계 20% → 인력 20% + 기계 80%
- ④ 관로 터파기(리핑암) 터파기 품 삭제
 - 터파기품 중복 삭제 → 대형브레이카 및 들어내기로 수정
- ④ L형 옹벽(H=6.0m) 철근가공 및 조립(복잡) 품 수정
 - 현장가공 → 공장가공(운반비 별도)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0.
- 사업규모
 - 목 적 : 방제조 개보수 사업
 - 규 모 : 축제공 L=1,942m, B=4.0m, 파라펫 444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2,390,496		2,074,2112	316,285	13.2%

주요 심사내용

- 성토다짐공 적용장비 조정 : 도자+진동로라(자주식)
 - 고르기 운반거리 L=20m → L=10m,
 - 진동로라(자주식 10ton) → 양측식로라(견인식 9ton)
- 순성토 운반 장비 효율 및 단위수량 조정
 - 단위중량(rt) 1.7 → 1.6, 체적환산계수(L) 1.25 → 1.24
- 신축이음재 가공설치비 조정
 - 재료비의 10% → 5%
- 조립식 가설건물 면적 조정 : 표준품셈 2-1(직접노무비 기준)
 - 가설사무소 A=580m² → 360m², 창고 A=100m² → 80m²

피복석 운반 적재장비 및 품 삭제 : 상차도 기준

- 덤프 적재시 적재장비 조정 : 백호우1.0m³ → 로우더 1.72m³

사석 운반 적재장비 및 품 삭제 : 상차도 기준

- 덤프 적재시 적재장비 조정 : 백호우1.0m³ → 로우더 1.72m³

사석 투하 체적환산계수 조정

- 체적환산계수(f) 0.89 → 1.0

사석 속고르기 비용 조정

- 크레인 비용 삭제 : 4,912원/m³ → 12,296원/m³(△12,616원/m³)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① 요청기관 : 0 0 군
- ② 심 사 일 : 2009. 11.
- ③ 사업규모
 - 목 적 : 농공단지 조성사업
 - 규 모 : 단지 149,336㎡ 우수공 1,417m, 우수공 980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913,400		4,208,479	704,921	13,6%

주요 심사내용

- ① 순성토 운반 품 조정
 - 도로 여건을 감안한 평균 주행속도 변경
 - 공차시 25km/hr → 35km/hr, 적재시 20km/hr → 35km/hr
- ② 콘크리트 포장깨기 품 조정
 - 집토비용 삭제(포장깨기 후 직접 폐기물 상차)
- ③ U형측구, L형측구, 도수로 및 산마루측구 품 조정
 - 합판거푸집(4회) → 유로폼(벽체, 0~7m)
- ④ P.C BOX 운반 품 조정 : 운반거리 변경
 - 운반거리(L)=300km → 70.0km

호안블럭 설치 품 조정 : 호안블럭 중량 보정(표준품셈 13-6)

- 작업반장($0.015\text{인}/\text{m}^2$) → 삭제
- 특별인부($0.021\text{인}/\text{m}^2$) → 특별인부($0.015\text{인}/\text{m}^2$)
- 보통인부($0.026\text{인}/\text{m}^2$) → 보통인부($0.022\text{인}/\text{m}^2$)
- 굴삭기($0.120\text{hr}/\text{m}^2$) → 굴삭기($0.080\text{hr}/\text{m}^2$)

임시침사지 설치 품 조정 : 불필요한 P.P마대 쌓기 삭제

- 50,886,518원/개소 → 16,118,592원/개소

콘크리트포장(인력) 품 조정 : 표준품셈 12-3-2

- 양생재 살포 → 비닐양생(5회 사용)

철근가공 및 조립 품 조정 : 표준품셈 6-2-2

- 철근가공(현장) → 철근가공(공장)

철평석 판석포장 품 조정 : 판석놓기 품 단위환산 변경

- 판석놓기($0.65\text{m}^2/\text{m}^2$) → 정원석 놓기($0.008\text{ton}/\text{m}^2$)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관광지 이벤트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 적 : 관광지 이벤트 조성사업
 - 규 모 : 파고라 외 14종, 무대동 철콘조 87.67㎡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08,004		660,253	47,751	6.7%

주요 심사내용

- 마사토 포장 품 조정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 → 0.1㎡
- 계 및 물고기 조형물 자연석놓기 품 삭제
 - 견적에 설치품 포함
- 계단 쌓기품 조정 : 표준품셈 7-1-2
 - 자연석쌓기(20ton이상) 11.34 → 야면석 쌓기 9.6㎡
- 자연석쌓기(2단)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7-1-2
 - 자연석쌓기 20ton미만 → 메쌓기/큰조약돌 및 야면석

▶ 캠프파이어시설 품 조정

- 자연석쌓기 20ton미만 3.59ton → 야면석 쌓기 5.65m²

▶ 해미석 포장(φ30mm내외,흑색) 품 조정 : '09년 적산자료 참조

- φ30mm내외,흑색 : 88,796원/m² → 75,487원/m²
- φ30mm내외,백색·적색 : 101,267원/m² → 87,400원/m²
- φ30mm내외,청색 : 93,467원/m² → 79,600원/m²

▶ 디딤돌 놓기 품 조정

- 특별인부 0.09인 → 0.007, 보통인부 0.02 → 0.0148

▶ 목재가공조립 및 설치/구조체 뼈대 → 보통구조 하

- 건축목공 6.31 → 6.285, 보통인부 1.31 → 0.682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지방 상수도 개설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 적 : 상수도 개설공사
 - 규 모 : 배수관로 30,959m, 급수관로 26,094m, 가압장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489,858		5,148,055	341,803	6.2%

주요 심사내용

- 관로 터파기(풍화암, 연암) 일작업량 조정 : 표준품셈 10-20 준용
 - 풍화암 대형브레이커 $Q=2.8\text{m}^3/\text{hr} \rightarrow 3.8\text{m}^3/\text{hr}$
 - 연 암 대형브레이커 $Q=2.5\text{m}^3/\text{hr} \rightarrow 3.5\text{m}^3/\text{hr}$
- 보조기층 및 석분운반 적재 진입시간 조정 : 표준품셈 10-11
 - 석산 구입 : 덤프 $T4=0.42\text{min} \rightarrow T4=0.15\text{min}$
- HI-CP 절단(D200mm) : 지상절단 20% 삭감
 - 보통인부 0.3인 $\rightarrow$ 보통인부 0.24인
- 비닐깔기 및 양생 설치품 삭제 : 표준품셈 12-3-2
 - 보통인부 0.04인 $\rightarrow$ 보통인부 0인(포설품에 포함)

제수변 보호통 거꾸집 수량 조정 : 수량오류

- 합판거꾸집 $1.2\text{m}^2 \rightarrow 0.36\text{m}^2$

유로폼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6-3-5

- 형틀목공 0.127인 $\rightarrow 0.096\text{인}$, 보통인부 0.076인 $\rightarrow 0.045\text{인}$

FRP변실 설치품 조정 : 보통인부 2인 삭제

- 공기변실 : 크레인 4hr $\rightarrow 0.76\text{hr}$ ($\Delta 308,558\text{원}$ /개소)
- 이토변실 : 크레인 4hr $\rightarrow 1.20\text{hr}$ ($\Delta 285,100\text{원}$ /개소)
- 제수변실 : 크레인 4hr $\rightarrow 1.20\text{hr}$ ($\Delta 285,100\text{원}$ /개소)

자재단가 조정

- PVC 지수판 : 지수판 $44,000\text{원/m} \rightarrow 4,400\text{원/m}$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09. 12.
- ☞ 사업규모
 - 목 적 : 토사붕괴 방지사업
 - 규 모 : 흙막이 1,921㎡, 옹벽공 68.6m, 조경공 1식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87,680	2,159,696	427,984	16.5%

주요 심사내용

- ☞ 세륜세차시설 설계서 반영으로 환경보전비 삭제
- ☞ 콘크리트깨기 품 조정
 - 인력(할석공) 5인/㎡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품 조정 : 기계 100%로 변경
 - 굴삭기(0.7㎡급) 90% + 인력10% → 굴삭기(0.7㎡급) 100%
- ☞ 기초잡석 품 기계장비 규격 조정
 - 굴삭기 0.4㎡급 → 0.7㎡급
- ☞ 소형고압 및 점토블록포장 품 조정 : 표준품셈 12-3-3
 - 특별인부 0.031인 → 0.0067인, 보통인부 0.092인 → 0.0133인

▶ **절토면 고르기(발파암) 삭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참조**

- 8,434원/㎡ → 0원/㎡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품 조정 : 표준품셈 4-7**

- 57,465원/㎡ → 45,903원/㎡ (△11,562원/㎡)

▶ **운동시설물 가격 조정(물가정보 → 조달)**

- 스트레칭로라 : 2,880,000원/조 → 2,090,909원/조

- 핸들웨이트 : 1,900,000원/조 → 1,427,273원/조

▶ **자재가격 조정**

- 탄성고무매트 : 389,200원/㎡ → 255,000원/㎡

- 고철 : 330,000원/Ton → 340,000원/Ton

▶ **수량 조정 : 옹벽공 신설에 따른 절토부 경사조정**

- 발파암깎기 수량 조정 : 12,163m³ → 9,887m³

- 발파암터파기 수량 조정 : 353m³ → 311m³

- 사토랑(토사) 수량 조정 : 1,197m³ → 939m³

- 사토랑(발파) 수량 조정 : 12,516m³ → 10,197m³

- 녹화토암절개면보호공 수량 조정 : 3,598m³ → 3,169m³

- 절토면고르기(발파암) 삭제 : 3,598m³ → 0m³

- 옹벽블럭 높이조정 : 135m³ → 122m³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경관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10. 1.
- 사업규모
 - 목 적 : 관광지 주변 조성사업
 - 규 모 : 잔디블럭 2,194㎡, 의자 40개소, 조경수 1,313주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30,061	742,360	87,701	10.6%

주요 심사내용

- 시설물공 데크설치 품 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치품 참조
 - 데크설치 : 38,657원/㎡ → 18,600원/㎡(△20,257원/㎡)
- 표토제거 운반거리 품 조정 : 6.0km → 현장정리 0.5km
- 수목류 자재대 조정 : 조달청 단가
 - 소나무(H3.5×W1.5×R15) : 2,000천원/주 → 1,660천원/주
 - 향나무(H1.5×W2.0) : 310,천원/주 → 281천원/주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가격정보 등 실 거래가격 조사 등

【토목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10. 1.
- 사업규모
 - 목 적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규 모 : 도로 L=460m, B=8.0m, 옹벽공 480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15,890		973,610	242,280	19.9%

주요 심사내용

- 가설사무실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 2-2-2
 - 사무실, 숙소 : 건축목공 0.4 → 0.30, 보통인부 0.20 → 0.12
 - 창 고 : 건축목공 0.3 → 0.23, 보통인부 0.15 → 0.10
- 콘크리트 타설품 조정 : 표준품셈 6-1-1
 - 무근 : 콘크리트공 0.15 → 0.12, 보통인부 0.27 → 0.15
 - 철근 : 콘크리트공 0.17 → 0.14, 보통인부 0.29 → 0.16
 - 소형 : 보통인부 0.42 → 0.30
- 보차도 경계석(180*200*1000) 설치품 조정 : 표준품셈12-5-3
 - 특별인부 0.15 → 0.027, 보통인부 0.2 → 0.0091
- 와이어메쉬 깔기, 비닐깔기품 삭제 : 콘크리트 포설품에 포함

콘리트 포장품 조정 : 표준품셈 12-3-2

- 콘크리트공 0.15 → 0.03, 보통인부 0.27 → 0.03

철근가공 및 조립품 조정 : 표준품셈 6-2-1

- 현장가공 및 조립(보통) → 공장가공 및 조립(보통)
- 현장가공 및 조립(복잡) → 공장가공 및 조립(복잡)

가설방음벽 설치비 조정 : 표준품셈 2-3-4

- 분진망 설치 : 비계공 0.026 → 0.019
- 방음판 설치 : 철공 0.22 → 0.11, 트럭크레인 → 굴삭기0.2m³급

줄메 불임 설치품 조정 :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

- 보통인부 0.69 → 0.45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10. 2.
- ▶ 사업규모
 - 목 적 : 소하천 정비사업
 - 규 모 : 호안공 A=8,822㎡, 라멘교 23m, 박스교 23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61,400		1,065,790	95,610	8.2%

주요 심사내용

- ▶ 2010년 기계경비 운전경비 조정
 - 건설기계조장 삭제
- ▶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 → MUDPACK시드스프레이
 - 5,655원/㎡ → 4,580원/㎡ (△1,075원/㎡)
- ▶ 콘크리트타설 조정
 - 레미콘(무근)인력→레미콘(무근)기계
- ▶ 호안공 : 블럭설치비 조정
 - 계단블럭 : 업체설치비 → 중량구조물설치
 - 유로블럭 : 업체설치비 → 중량구조물설치

강관파일 두부보강 조정

- 용접공 0.72인 → 0.36인, 보통인부 0.47인 → 0.21인
- 인력편치 → 마그네틱편치

강관파일 항타조정 : 토질보고서에 의한 N치 조정

- 토 사 N치 40 → 7 조정
- 풍화암 N치 40 → 50 조정

암거교량 : 설명판, 교명판 삭제

- 설명판 2개소 : 74,629원/개 → 삭제(△74,629원/개)
- 교명판 2개소 : 27,332원/개 → 삭제(△27,332원/개)

철근가공 및 조립비 조정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간단 : 392,940원/ton → 278,353원/ton(△114,587원/ton)
- 보통 : 442,716원/ton → 310,442원/ton(△132,274원/ton)
- 복잡 : 483,662원/ton → 338,792원/ton(△144,870원/ton)

문양거푸집설치비 조정(중복계상)

- 문양거푸집 → 문양거푸집 부착 및 철거
- 17,981원/㎡ → 8,427원/㎡(△9,554원/㎡)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도로 확 포장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2.
- 사업규모
 - 목 적 : 도로확포장공사
 - 규 모 : 도로 L=0.817km, B=8.0m, 측구공 1,192k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73,270		368,950	104,320	22.0%

주요 심사내용

- 보험요율 조정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요율 : 4.78% → 6.55%(증1.77%)
- 아스콘포장깨기 작업량 조정 : $Q=4.60\text{m}^3/\text{hr} \rightarrow 5.00\text{m}^3/\text{hr}$
- 택코팅 및 프라임코팅 내역 계상 오류
 - 택 코 티ング : 7,814.7a → 78.14a
 - 프라임코팅 : 7,412.2a → 74.12a

주요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3.
- 사업규모
 - 목 적 : 부지조성공사
 - 규 모 : 부지면적 49,000㎡, 암거공 39m, 측구공 495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34,120		860,840	73,280	6.9%

주요 심사내용

- 과다 및 불필요 계상된 대가 조정
 - 절토면 고르기 연암(583㎡) 보통암(2,282㎡) 삭제
- 암절개면 보호공 공법 변경(녹생토공법 → 머드팩공법)
 - 리핑암 42,558원/㎡ → 42,664원/㎡(증76원/㎡)
 - 발파암 53,951원/㎡ → 52,861원/㎡(△1,090원/㎡)
- 현장 시설공 설치비 조정 : 표준품셈 2-2-3
 - 크레인 사용시간 1동당 2hr → 1hr 변경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연안정비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3.
- 사업규모
 - 목 적 : 연안침식 호안정비
 - 규 모 : 호안 380m, 자연석쌓기 336m, 데크 20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55,700	891,270	64,430	6.7%

주요 심사내용

- 철근가공 및 조립 기구손료
 - 노무비의2%→ 가공노무비 2%
- 자연석쌓기 공법변경(자연석쌓기 → 메돌붙임)
 - 자연석쌓기 111,293원/ton → 메돌붙임 171,359원/m²
→ 순공사비 감(△18,986천원)
- 친수호안블록 설치품 조정
 - 중량구조물 2.0ton이상→ 2.0ton이하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00 생활환경 정비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 사 일 : 2010. 4.
- 사업규모
 - 목 적 :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사업
 - 규 모 : 전석쌓기 358㎡, 마을 Con'c포장 1,008㎡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19,250	1,053,300	65,950	6.9%

주요 심사내용

- 환경보전비 제비율 삭제
 - 세륜세차시설 설치비가 반영되어 중복
- 속고르기 적용 수량 삭제
 - 덤프부설후 기초석 고르기 적용
- 사석부설 단가 조정 : 작업효율(E) = 0.35 → 0.45
 - 인력20% + 기계80% → 인력10% + 기계90%
- 구조물깨기(철근) 일작업량 조정
 - 작업량(Q) = 2.45㎡/hr → 3.3㎡/hr
- 뒷채움 잡석(비다짐) 적용 단가 조정
 - 살수차(5500L) 삭제 : 5,961원/㎡ → 5,005원/㎡(△956원/㎡)

가설사무실 적용 단가 조정

- 노무비, 재료비, 경비 → 경비

중기운반 단가 항목 조정

- 노무비, 재료비, 경비 → 경비

실거래가격에 의한 보조기층 자재 단가 조정

- 12,000원/㎡ → 10,500원/㎡(△1,500원/㎡)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00 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10. 6.
- ☞ 사업규모
 - 목 적 : 노후하천 및 교량 정비사업
 - 규 모 : 흙막이 21,883m³, 교량공 90m, 호안블럭 225m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726,590		1,606,520	120,070	5.5%

주요 심사내용

- ☞ 수중보 레미콘타설 방법변경
 - 레미콘타설 → 펌프카 타설
- ☞ 교량공 아스팔트방수 단가조정
 - 보통인부 0.08인 → 보통인부 0.065인
- ☞ 교량공 낙하방지망 설치 삭제
 -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8.0m, 현장조건은 H=5.0m 이므로 삭제
 - 11,821,005원 → 0원(△11,821,005원)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00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 사 일 : 2009. 8.
- ☞ 사업규모
 - 목 적 : 침수방지용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규 모 : 우수저류조 1,850㎡, 사면보호 1,098㎡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497,975		3,241,021	256,954	7.3%

주요 심사내용

- ☞ 가 시설공 현지여건에 맞추어 물량 조정(파일깊이 10 → 9m)
 - H-PILE항타 : 1,321m → 1,189m(감 132m)
- ☞ 원형거푸집 조정
 - 원형거푸집 3회 49,760㎡/원 → 강재 원형거푸집 27,901㎡/원
- ☞ 어스앵커 천공 작업능력 품 조정
 - 보통토사 2.4m/hr → 3.5m/hr, 풍화암 2.5m/hr → 3.2m/hr
- ☞ 사토처리 공종 조정(적사 제외)
 - 적사 → 운반 → 정리 → 운반 → 정리(터파기와 동시 적사)
- ☞ H-pile 천공 장비 조정
 - 보링기계 천공 33,347m/원 → 오거(Auger) 천공 7,289m/원

● H-pile 항타 및 인발 - 토질 지층별 천공시간(N치) 조정

- N값 30(자갈층) 129,516본/원 → N값 0(점토층) 31,480본/원

● 띠장설치 및 해체 품 조정 (21,961m/원 → 18,214m/원)

- 비계공 3.0인 → 1.0인, 철골공 1.0인 → 2.0인

● 토류판 손료 조정 : 2회 75% → 1회 50%(3개월 미만)

● PAP설치 품 조정

- 작업반장 0.22인, 비계공 0.12인, 특별인부 0.42인, 보통인부 0.86인,
철근공 0.02인, 형틀목공 0.071인 → 특별인부 0.42인, 보통인부 0.86인

● PAP, 조립식 PC암거 운반 경비로 조정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경비(간접노무비 등 절감)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00~00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 적 : 진입도로 개설공사
 - 규 모 : 도로개설 1.85km, 교량 2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019,000		7,482,400	536,600	6.7%

주요 심사내용

- 환경보전비 삭감
 - 세륜 세차, 오탁방지망 등 시설비와 중복 계상
 - 기타 환경보전비 10%삭감(중복 계상)
- 交通安全 시설비 중 재료비 삭감
 - 산업안전보건비와 중복 계상
-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피복석 골재 운반 조건 조정
 - 운반시간 : 1회당 83.44분, 11,511원/㎡ → 79.49분, 11,284원/㎡
- 피복석 제거 품 조정
 - 무한케도크레인(10ton) + 인력 → 피복석 고르기 품의 50%

반입토 운반 수량 품 조정

- 반입토 운반 : 적사 + 운반 → 운반(터파기와 동시 적재)

비탈면(리핑암) 면고르기 품 삭제

- 국도건설공사 설계적용기준 적용

강관파일 구입 및 운반 품 조정

- 강관파일(ϕ 508.0mm, t=12mm) : 1m당 → 1kg/m로 단위 환산
185,724원/m → 152,001원/m

피복석 고르기 품 조정

- 피복석 고르기 : 운반 + 쌓기 + 고르기 → 운반 + 고르기
34,510원/m³ → 26,302원/m³

물가자료 등 가격변동에 의한 철근 고재처리비 조정

- 고재처리비 280,000원/ton → 340,000원/ton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 적 :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 규 모 : 공단조성 145,764㎡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804,720		3,337,340	467,380	7.3%

주요 심사내용

- 상수도 안전시설비 삭감
 - 산업안전보건비와 중복 계상
- 철근고재 수량 조정 : 철근콘크리트 파쇄시 발생된 고철반영
 - 3.721ton → 65.671ton(증 61.951ton)
- 모래부설 장비조합 품 조정
 - 인력 100% → 인력 10% + 기계 90%
 - 모래부설 27,163원/㎡ → 3,345원/㎡
- 대규모 토공 장비조합 품 조정
 - 인력 20% + 기계 80% → 인력 10% + 기계 90%

교량 슬라브내 PVC전선관 설치 품 조정

- 배관공 0.27인, 특별인부 0.14인 → 재료비의 5%

철근가공조립 품 조정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대규모 자재 관급 구매

- 강관파일(φ 508×12) 사급을 관급으로 전환 : 경비 감액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 적 :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유입공사
 - 규 모 : 송수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D=300mm) 19.5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169,900	3,846,800	323,100	7.7%

주요 심사내용

- 강관 접합 등 수량 조정
 - 직관(D=300mm) 길이 6.0m → 9.0m
 - 강관 접합 1,070개소 → 752개소(감 318개소)
 - 강관 용접부 도장 1,070개소 → 752개소(감 318개소)
- 수압시험 방법 조정
 - 수압시험 : 용접부당 1회 → 200m당 1회
- 제수변실 방수 형식 조정
 -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 아스팔트방수
- 가압장내 슬리브 배관 자재 변경
 - 수도용 PE관(D=100mm) → 백관(D=100mm)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00 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11.
- 사업규모
 - 목적 : 생태하천정비
 - 규모 : 하천정비 2.72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559,000		7,251,000	308,000	4.1%

주요 심사내용

- 여울 기초잡석 유용으로 사토처리 물량 조정
 - 사토량 26,581m³ → 27,567m³(△986m³)
- 공사장내 성토 운반단가 조정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 감액 : 0.5분 → 0분
- 성·절토 면고르기 품 조정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과다 계상된 터파기 품 조정
 - 작업반작 삭제 : 표준품셈 개정

④ 뒤채움(백호우 0.7m³) 부설 및 다짐 품 조정

- 현장 여건상 인력작업 불필요

④ 목재(데크)설치 품 조정 : 회사 견적 → 평균단가

- 건축목공 0.32인 → **0.165인**
- 보통인부 0.11인 → **0.027인**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1.
- 사업규모
 - 목 적 : 마을오수처리 처리사업
 - 규 모 : 오수관거 6.377km, 하수처리시설 48ton/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53,710	699,880	53,830	7.1%

주요 심사내용

- 가체절 개소수 조정 : 2개소 → 1개소
 - 동시 시공이 가능하기에 1개소 삭제
- 표층 아스콘 포설 및 다짐 품 조정
 - 더썩우기 포장(시공폭 3m이상) 1일 시공량 2000m³ → 5000m³
- 편수 칼라 접합 및 부설 품 조정
 - 보통인부 0.114인, 배관공 0.078인 → 0.088인, 0.060인
- 보조기층 2중 재료할증에 따른 수량 감액
 - 수량 : 974m³ → 807m³(감167m³)
- 석축용 깬잡석 유용 26m³ → 0m³(감26m³)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 고제처리 : 160,000원/톤 → 360,000원/톤
- 내충격 수도관 : 27,273원/본 → 24,945원/본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계상 검토

【토목공사】

00 용수공급 시설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1.
- 사업규모
 - 목 적 : 관광지내 상수도 공급시설
 - 규 모 : 송수관로(D100~150) 9.52km, 가압장 1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16,190		575,100	145,790	19.4%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 안전웬스 1,350m →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 정산
- 내충격 수도관 수량 조정(이형관 자재 중복 반영)
 - 이형관에 소켓이 부착되어 별도 계상된 소켓 수량 삭제
 - D100mm 61개, D150mm 53개, D200mm 346개
- 불필요한 수도관 절단비 및 엘보(11.25°) 수량 조정
 - 신축성이 있는 수도관으로써 11.25°등의 굴곡은 절단 불필요
- 표준품셈 변경에 따른 일위대가 조정
 - 내충격 수도관 접합 및 부설 품 조정
 - 제수변 접합 및 부설 품 조정
 - 시멘트 액체방수, 아스팔트 방수

노후 구조물 깨기 장비작업 작업량 조정

- 콘크리트 : 대형브레이커+백호0.4m³ Q=3.3m³/hr → 4.6m³/hr
- 아 스 콘 : 대형브레이커+백호0.4m³ Q=3.5m³/hr → 5.0m³/hr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 계상 검토

【토목공사】

방파제 시설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사일 : 2010. 1.
- 사업규모
 - 목적 : 방파제 시설공사
 - 규모 : 송수관로(D100~150) 9.52km, 가압장 1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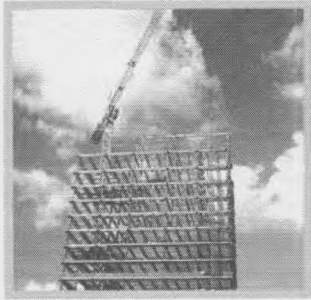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16,190		575,100	145,790	19.4%

주요 심사내용

- 물가변동에 의한 TTP 거푸집 제작 고철공제 단가조정
 - 고철공제 : 110,000원/톤 → 290,000원/톤
- TTP 제작 콘크리트 타설
 - 레미콘 타설 → 펌프카 타설(22,262원/㎡ → 10,976원/㎡)
- 중장비 기계경비
 - 2010년 표준품셈 변경에 따른 건설기계 조장경비 삭제

주요 착안사항

-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 작업품 산정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2. 건축공사

목 차

- 문화재 찾아가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P 83)
- 주민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P 85)
- 효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P 87)
- 한국전통 목공예관 조성사업 (P 89)
- 상설시장 이설공사 (P 91)
-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P 93)
- 미술관 건립공사 (P 95)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P 97)
- 야외전시장 건립사업 (P 99)
-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 (P 101)

[건축공사]

문화재 찾아가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9.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건축연면적 457m²)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 금액	⇒	조정 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3,124		1,196,338	136,786	10.3%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비 조정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조립식 가설창고 노무비
 - 수평기준틀 재료비
 - 강관비계매기, 이동식강관말비계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콘크리트 공사비 조정
 - 유로폼 노무비
 -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펌프카 불타설 노무비
 - 철근가공 및 조립 노무비
 - 와이어메쉬 깔기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방수공사비 조정

- 시멘트액체방수 노무비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변정비 공사비 조정

- 잔디블럭 설치 노무비
- 잔디식재 노무비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단가 조정

- 목재하부공사 : 71,044원/㎡ → 69,247원㎡
- 목재걸레받이공사 : 17,886원/㎡ → 17,018원㎡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철강제품, 목재, 연마지, 포천석 판재, 배관용동관, 대변기 등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건축공사]

주민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09. 9.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배드민턴장(건축연면적 5,436㎡)
-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945,470		1,877,070	68,400	3.5%

주요 심사내용

- ☞ 가설공사비 조정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내부말비계 → 이동식강관말비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철근가공 방법 조정
 - 현장 → 공장이공으로 조정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기초공사
 - 파일항타비 조정 : 19,332원/m → 11,543원/m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리끼우기 및 닦기 노무비 조정

- 복층유리 18mm : 21,193원/㎡ → 15,692원/㎡
- 일반유리 10mm미만 : 31,126원/㎡ → 6,752원/㎡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견적단가 조정

- 목재하부공사 : 71,044원/㎡ → 69,247원/㎡
- 목재걸레받이공사 : 17,886원/㎡ → 17,018원/㎡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철강제품, 합성목재, 포천석 판재, 전기온수기, 대변기 등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건축공사】

효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1.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전시체험장, 누각 등(건축연면적 479㎡)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582,430		1,492,518	89,912	5.7%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비 조정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조립식 가설창고 노무비
 - 수평기준틀 재료비
 - 강관비계매기, 이동식강관말비계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공종 조정
 - 기계 80%, 인력 20% → 기계 90%, 인력 10%
 - ※ 근거 : 현장 여건

콘크리트 공사비 조정

- 유로폼 설치, 와이어메쉬 깔기 노무비
 -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펌프카 뭉타설 노무비
 - 합판거푸집 제작 설치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방수공사비 조정

- 시멘트액체방수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역제품 권장(사급자재 → 관급자재로 조정)

- SOIL포장(T=10) : 806m²
 - 그린잔디블럭 A형(450×450×120) : 704m²
- ※ 근거 : 지역제품 활성화

한옥에 맞는 벽체 공법 조정

- 시멘트벽돌 쌓고 황토몰탈 마감 → 전통단열외 위고 황토회벽치기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철강제품, 목재(원목, 각재, 판재), 좌변기, 대변기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한국전통 목공예관 조성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10. 1.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목공예관(건축연면적 1,650m²)
-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407,219		1,299,094	108,125	7.7%

주요 심사내용

- ☞ 가설공사비 조정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공종 조정
 - 기계 80%, 인력 20% → 기계 90%, 인력 10%
 - ※ 근거 : 현장 여건
- ☞ 합판거푸집 손료 조정
 - 3회 → 5회로 조정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리끼우기 및 닦기 노무비 조정

- 복층유리 16mm : 26,140원/㎡ → 7,260원/㎡
- 일반유리 10mm이상 : 47,613원/㎡ → 7,430원/㎡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비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으로 삭제

※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한식기와, 목재, 좌변기, 대변기 등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상설시장 이설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10. 1.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상설시장 장옥(건축연면적 4,429㎡)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587,639		3,432,584	155,055	4.3%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비 조정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공종 조정
 - 기계 80%, 인력 20% → 기계 90%, 인력 10%
 - ※ 근거 : 현장 여건
- 철근가공 및 조립 손료 조정
 - 가공 및 조립 품의 2% → 가공 품의 2%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리끼우기 및 닦기 노무비 조정

- 복층유리 16mm : 26,366원/㎡ → 6,650원/㎡
- 복층유리 10mm : 48,122원/㎡ → 6,680원/㎡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비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으로 삭제

※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줄메 노무비 조정

- 보통인부 : 0.06인 → 0.045인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연마사괴석 쌓기 노무비 조정

- 석공 : 0.49인 → 0인, 보통인부 : 0.25인 → 0.015인,
- 특별인부 : 0인 → 0.0074인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한식기와, 목재, 좌변기, 대변기 등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건축공사】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시
- ▶ 심 사 일 : 2010. 2.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주요내용 : 쌀문화 테마공원(건축연면적 2,313㎡)
-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973,268		3,842,297	130,971	3.3%

주요 심사내용

- ▶ 가설공사비 조정
 - 내부말비계 → 이동식강관말비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기초공사비 조정
 - 구조물 터파기, 잡석기초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되메우고 다지기 공사비 조정
 - 최적환산계수(f) : 0.8 → 1.0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콘크리트 공사비 조정

- 합판거푸집 노무비
- 무근콘크리트 타설 노무비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줄때 노무비 조정

- 보통인부 : 0.0483인 → 0.045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식재 유기질 비료 수량 조정

- 소나무, 은목서, 이팝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등
- ※ 근거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철강제품, 목재(다그라스, 미송), 고흥석, 황등석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미술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09. 10.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주요내용 : 미술관, 게스트하우스(건축연면적 1,515㎡)
-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713,972		3,613,175	100,797	2.7%

주요 심사내용

- ☞ 가설공사비 조정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터파기, 되매우고 다지기 공종 조정
 - 기계 80%, 인력 20% → 기계 90%, 인력 10%
 - ※ 근거 : 공사현장 여건
- ☞ 콘크리트 공사비 조정
 - 합판거푸집 손료 : 4회 → 5회
 - 철근가공 : 현장 → 공장가공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리끼우기 및 닦기 노무비 조정

- 복층유리 16mm : 26,140원/㎡ → 6,650원/㎡
 - 복층유리 12mm : 24,273원/㎡ → 6,160원/㎡
 - 강화유리 10mm : 47,613원/㎡ → 7,430원/㎡
-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프라이머 바름 노무비 조정

- 방수공 : 0.026인 → 0.02인, 보통인부 : 0.026인 → 0.02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내충격지수단관 설치 노무비 조정

- 배관공 : 0.109인 → 0.065인, 보통인부 : 0.12인 → 0.1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철강제품, 다그라스(원목, 각재, 판재), 포천석, 속빈시멘트블럭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09. 6.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교류동, 체험동, 토석담장 등(건축연면적 275㎡)
-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91,520		1,112,543	78,977	6.6%

주요 심사내용

- ☞ 가설공사비 조정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부지조성 포설 및 다짐 방법 조정
 - 굴삭기+인력+램머 → 그레이다+살수+로라다짐
 - ※ 근거 : 공사현장 여건
- ☞ 잔토처리 운반거리 조정
 - 10km → 7km
 - ※ 근거 : 공사현장 여건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품 조정**

- 철근콘크리트 타설 , 유로폼 설치
- 시멘트액체방수, 타일붙임 등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한옥형 시멘트기와 잇기 방법 조정**

- 3겹 잇기 → 2.5겹 잇기

※ 근거 : 실제 시공방법 적용

■ **PE이중벽관 매설 노무비 조정**

- D200 : 배관공 0.059인 → 0.033인
- D300 : 배관공 0.065인 → 0.048인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목재(육송, 미송, 다그라스), 무늬유리, 포천석 판재, 시멘트 등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야외전시장 건립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5.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가옥, 협문, 모정이설 등(건축연면적 945㎡)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03,430	2,308,440	194,990	7.8%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비 조정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노무비, 기계손료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철근가공 및 조립 기구손료 조정
 - 가공 및 조립 품의 2% → 가공 품의 2%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도막방수 노무비 조정
 - 방수공 : 0.091인 → 0.07인, 보통인부 : 0.052인 → 0.04인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화강석 설치 노무비 조정

- 석공 : 1.5인 → 0.49인, 보통인부 : 1.2인 → 0.25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경 가식 후 이식 노무비 조정

- 조경공 : 0.28인 → 0.12인, 보통인부 : 0.04인 → 0.02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옥형 시멘트기와 잇기 방법 조정

- 3겹 잇기 → 2.5겹 잇기
- ※ 근거 : 실제 시공방법 적용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목재(육송, 미송, 다그라스), 화강석, 잔디, 시멘트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건축공사】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12.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주요내용 : 교육관(건축연면적 2,039㎡)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764,992		3,577,483	187,509	5.0%

주요 심사내용

-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비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으로 삭제
 - ※ 근거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미 반영된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반영
 - 가설사무실 24㎡, 가설창고 70㎡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합판거푸집 손료 조정
 - 2회 → 4회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리끼우기 및 닦기 노무비 조정

- 10mm 미만 : 34,543원/㎡ → 6,680원/㎡
- 10mm 이상 : 47,613원/㎡ → 7,430원/㎡
- ※ 근거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관로 되메우기 체적환산계수 값 조정

- f : 0.9 → 1.0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모래부설 및 다짐 노무비 조정

- 보통인부 : 0.4인 → 0.2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점토블럭포장 노무비 조정

- 보통인부 : 0.0166인 → 0.0133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옥형 시멘트기와 잇기 방법 조정

- 3겹 잇기 → 2.5겹 잇기
- ※ 근거 : 실제 시공방법 적용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목재(육송, 미송, 다그라스), 잔디, 콘크리트파일, 속빈시멘트블럭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여부



3. 기계설비 · 전기공사

목 차

- 목공예관 조성사업 (P 105)
- 유통센터 저온창고 설치 보완사업 (P 107)
-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P 108)
-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P 109)
- 수산물식품 지원센터 신축공사 (P 110)
-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P 111)
-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 (P 112)
- 위생처리장 개선사업 (P 114)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P 115)
- 산단조성 사업 전기공사 (P 116)
- 분뇨처리 개선사업 전기공사 (P 118)
- 00대교 가로등 설치공사 (P 120)

[기계설비]

목공예관 조성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10. 1.
- ▶ 사업규모
 - 규모 : 장비, 위생기구, 위생, 환기 배관 설치 등 1식
 - 사업비 : 141,102천원(도금액 68,775 환급 72,327)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8,775		61,986	6,789	9.8%

주요 심사내용

- ▶ 장비 및 위생기구 자재 단가 조정
 - 저수조(SMC 20톤) : 11,968천원 → 7,842천원
 - 배기팬(30W) : 43,000원 → 32,500원(유통물가)
 - 원형세면기(L-1040) : 139,000원 → 118,100원

※ 조달청 가격정보
- ▶ 각형DUCT 제작 설치 공임 조정
 - 각형 DUCT(0.8T -m²) : DUCT공 0.52인 → 0.43인

※ 기계설비 표준품셈 : 2-4-2

내역서 산출 수량 조정

- 냉난방 드레인관 배관(PVC 25mm) : 81m → 68m
- 드레인관 보온 : 74m → 63m

주요 착안사항

- 설계도면과 내역서, 자재산출수량 일치 여부 확인
- 기계설비 표준품셈에 의한 공임 적용 적정 여부

[기계설비]

유통센터 저온창고 설치 보완 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10. 3.
- ✓ 사업규모
 - 규 모 : 콘덴싱 유니트 6대 설치(15HP 1, 20HP 1, 25HP 2, 30HP 1, 40HP 1)
 - 사 업 비 : 141,102천원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77,133		263,394	13,739	5%

주요 심사내용

- ✓ 콘덴싱유니트 단가 조정
 - 콘덴싱유니트(반밀폐왕복 단단) 20HP : 11,886천원 → 9,450천원
- ✓ 배관자재 단가 조정
 - 동관 L타입 D20 : 5,360원 → 4,690원
 - 백관(SPP) D125 : 26,162 → 13,640원
 - ※ 조달청 가격정보
- ✓ 냉매(후레온 22) 단가 조정
 - 후레온-22 : 32,000원 → 3,500원(물가자료)

주요 착안사항

- 물가 정보지, 조달청 가격정보 등 비교 최저가 반영
- 장비(유니트)는 2개업체 이상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적용

[기계설비]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10. 3.
- ✓ 사업규모
 - 규모 : 자동제진기 4대, 수평컨베이어 벨트 1대 설치 등 1식
 - 사업비 : 827,570천원(도급 148,170 관급 679,400)
 - 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27,570		775,450	52,120	6.3%

주요 심사내용

- ✓ 제진기 스크린 설치비 조정
 - 설치비 : 복잡(간단×1.4) → 보통(간단×1.2)
 - ※ 기계표준품셈 1-9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기준
- ✓ 자동제진기 견적 단가 조정
 - 자동제진기(4.5m×2.85m) : 153,000천원 → 142,000천원
 - ※ 2인이상 업체 비교 견적
- ✓ 수평이송 컨베이어 벨트 단가 조정
 - 수평컨베이어(0.75KW ×22m) : 55,920천원 → 49,870천원

주요 착안사항

- 제작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잡철물 제작설치 계상
- 장비는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적용

[기계설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3.
- 사업규모
 - 규모 : FRP 100톤/일
 - 사업비 : 192,258천원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92,258	153,258	39,000	20.3%

주요 심사내용

- 기계자재 1식 부분 재 설계 단가 조정
 - 1식 : 100,000천원 → 65,653천원
 - ※ 1식(구조물) 설계 후 설계가 적용
- PP-C 배관접합 노무비 조정
 - 접합개소당 노무비 : 9,686원 → 0원
 - ※ 배관설치비에 접합노임 기 포함
- 주요배관자재 단가 조정
 - 경질염화비닐관(D200) : 20,303원 → 12,930원
 - 구조용 강관(D32) : 5,380원 → 2,516원
 - 배관용 STS 파이프(D50) : 18,273원 → 15,696원 등
 -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주요 착안사항

- 금액이 높은 1식의 경우 세부내역 제출 단가 적정여부 확인
- 내역서에 이중으로 중복된 노무비가 계상되었는지 확인

[기계설비]

수산물식품 지원센터 신축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10. 3.
- 사업규모
 - 규모 : 생산동 연구동 장비, 위생, 난방, 자동제어 등 설치 1식
 - 사업비 : 2,516,301천원(도급액 1,561,884 관급 954,417)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561,884		1,508,270	53,614	3.4%

주요 심사내용

- 자재 단가 조정
 - 원형세면기 KSL1040 : 139천원 → 118천원 등
 - 유리솜 보온통 25T×D32 : 1,127원 → 1,071원 등
 - 백관(SPP) D20 : 1,769원 → 1,466원 등 30여개 품목
 - ※ 조달청 가격정보
- 연도직관 단가 조정
 - 연도 477직관(400H) : 133천원 → 69천원 등 10개 품목
 - ※ 조달청 가격정보
- TAB 용역 범위 조정
 - 물 분배 계통 및 소음측정은 불필요(협의) : 감 8,881천원

주요 착안사항

- 물가정보지, 조달청 가격정보 비교 후 최저가 반영
- TAB 공사 용역범위 설정 검토 후 불필요 부분 삭제

[기계설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5.
- 사업규모
 - 규모 : 처리용량 400톤/일
 - 사업비 : 1,695,672천원(도금액 1,695,672)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695,672		1,509,026	186,646	11%

주요 심사내용

- 세목스크린 액이송교방장치 등 15종 관급자재 변경
 - 제경비 포함된 세목스크린 등 15종 장비 관급 전환 : 859,300천원
 - ※ 근거 : 제경비 포함된 장비는 관급 또는 사급 전환 예산 절감
- 유량조 교반기 등 8종 단가 조정
 - 유량조교반기 : 10,800천원 → 10,500천원 등 8종 최저단가 적용
- 수중펌프 설치시 사용장비 시간 조정
 - 하수용 수중펌프 : 크레인 사용시간 4시간 → 2시간(현장여건 양호)
 - ※ 기계설비 표준품셈 : 6-1

주요 착안사항

- 단가에 제 경비까지 포함된 장비는 관급으로 전환(협의)
- 2인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 후 최저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보은 기계설비 품셈 적용

[기계설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2.
- 사업규모
 - 규모 : 처리용량 195Kg/hr 1식
 - 사업비 : 206,799천원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06,799		189,003	17,796	8.6%

주요 심사내용

- 주요자재 단가 조정
 - 단열캐스타블(INCT-140 kg당) : 1,050원 → 800원
 - 내화벽돌(SK-34) : 1,700원 → 500원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 강관 Fitting 취부 공임 조정
 - 강관 D150 : 플배공 0.17인 → 0.13 특인 0.08인 → 0.06인 등
 - ※ 기계설비 표준품셈 3편 1-1-4 2
- 투입설비 1,2차연소실 통풍설비 등 제작·설치비 조정
 - 제작설치비 : 복잡(간단×1.4) → 보통(간단×1.2)
 - ※ 기계설비 표준품셈 : 1-9(톤당 잡철물 공임비 산정방식)

주요 착안사항

-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비교 후 최저가 적용
- 기계설비 표준품셈 적정 적용 여부
- 잡철물 제작·설치시 작업난이도 판단하여 계상

[기계설비]

위생처리장 개선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5.
- 사업규모
 - 규 모 : 처리용량 50톤/일
 - 사 업 비 : 822,000천원(도금액 109,725, 관금액 712,275)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09,725		61,880	47,845	43.6%

주요 심사내용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단가 조정
 - 스테인레스강 D 150 : 53,737원 → 42,899원 등
 - ※ 법적근거 : 조달청 거래정보
- 고철자재비 계상
 - 협잡물처리기 등 고철자재 : 11. 3톤 × 350천원 = 3,955천원
- 기계장비 설치비 이중 계상 삭감
 - 협잡물처리기, 탈수기 등 견적서상 설치비 기 포함 : 23,629천원 → 0원

주요 착안사항

- 견적단가에 설치비·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필히 확인
- 장비 교체 등 개선사업의 경우 고철 단가 누락여부 등

[기계설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5.
- 사업규모
 - 규 모 : 처리용량 5톤/일
 - 사 업 비 : 1,191,300천원(도급액 1,191,300)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91,300	1,116,727	74,573	6.3%

주요 심사내용

- 슬러지 건조기 등 15종 장비 견적가 조정
 - 슬러지건조기(5톤/일) : 295,270천원 → 281,457천원 등
 - ※ 근거 :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 후 최저가 적용
- SPP 흑관 등 자재단가 조정
 - 흑관 100A×4.5T : 12,301원 → 7,763 등 26개 품목 조정
 - ※ 조달청 거래정보
- 강관배관보온 공임 조정(기계설비 품셈)
 - 보온 250A×50t : 보온공 0.148인/m → 0.11인/m 등

주요 착안사항

- 2인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 후 최저단가 적용
- 조달청 거래정보 및 보온 기계설비 품셈 적정 적용

[전기공사]

산단조성 사업 전기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3.
- 사업규모
 - 규 모 : 가로등 619본 신호등 7개 설치 등 1식
 - 사 업 비 : 6,217,705천원(도급액 **3,942,861** 관급 2,274,844)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942,861	3,696,186	246,675	6.3%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에 의한 재 경비 조정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간접) × 3.4% → 3.7%
 - 퇴직공제부금 : 직접재료비 × 2.3% → 직접노무비 × 2.3%

(단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5억이상시만 계상)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주요자재 단가 조정
 - 난연성비닐접지 케이블(6sp) : 700원/m → 524원/m
 - 폴리에틸렌 전선관(22mm) : 330원/m → 240원/m
 -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1c 70sp) : 7,671원/m → 5,834원/m
 - 교통신호등 단가 조정(LED 1면4색) : 1,000천원 → 443천원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나라장터

주요 착안사항

- 원가계산서 제 경비 요율 적정 계상 여부
- 물가정보지, 조달청 가격정보, 나라장터 중 최저가 적용

[전기공사]

분뇨처리 개선사업 전기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7.
- 사업규모
 - 규 모 : 인입 및 간선, 동력트레이 분전반 설치 등 1식
 - 사 업 비 : 1,001,670천원(도금액 615,230 관급 386,440)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15,230		566,241	48,989	8%

주요 심사내용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요율 조정
 - 조달수수료(내자구매) : 재료비× 5.4% → 0.54%
 - ※ 조달청 조달 수수료 요율표
- 케이블 공량 할증 조정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4심) 공량 할증 : 400% → 260%
 - 난연제어케이블(2심) 공량할증 : 200% → 140%
 - 내열비니절연전선(3심) 공량할증 : 300% → 200%
 - ※ 전기표준품셈 : 5-11

주요자재 단가 조정

- 강재전선관(아연도 28C) : 3,350원 → 2,530천원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125mm) : 2,805원 → 2,240원
 - 1종 금송제가요전선관(비닐피복 35mm 방수) : 2,240원 → 1,940원
-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나라장터

주요 착안사항

- 케이블 설치 공임 산정시 공량할증 적정 적용 여부
- 물가정보지, 조달청 가격정보, 나라장터 중 최저가 적용

[전기공사]

00대교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 심 사 일 : 2010. 5.
- 사업규모
 - 규 모 : 가로등 32주, 교량점검등 설치 1식 등
 - 사 업 비 : 394,020천원 (도금액 394,020천원)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94,020	330,863	63,157	16%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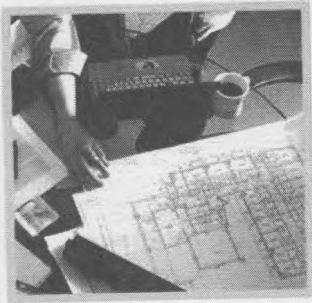
- 원가계산에 의한 재 경비 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times$ 12.2% $\rightarrow$ 11% (6개월 이하 추정가격 5억미만)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전선, 전선관 공임 조정
 - 강제전선관(54C) : 내선전공 0.803인/m $\rightarrow$ 0.34인/m
 - 가교PE케이블(70sp $\times$ 1c) : 저압케이블공 0.1026인/m $\rightarrow$ 0.057인/m
 - 600V 비닐절연전선(4sp) : 내선전공 0.023/m $\rightarrow$ 0.01/m
 - ※ 전기표준품셈 : 5-10, 11

주요자재 단가 조정

- 강재전선관(아연도 54C) : 6,499원 → 5,230천원
 - 가교PE 케이블(F-CV 1C 6mm²) : 845원 → 698원
 - 접지용 전선(GV 6mm²) : 700원 → 539원
-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나라장터

주요 착안사항

- 원가계산서 제 경비 효율 적정 계상 여부
- 물가정보지, 조달청 가격정보, 나라장터 중 최저가 적용



4. 일반용역

목 차

- 생태하천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P 125)
- 재해위험지구 책임감리용역 (P 126)
- 문화체험단지 책임감리용역 (P 127)
- 폐기물 처리용역 (P 129)
- 산성 문화재 발굴조사 (P 130)
- 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P 132)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P 133)
- 도시계획정보 구축사업용역 (P 135)
- 건축물 관리용역 (P 136)
- 폐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관리용역 (P 137)
- 교량 실시설계용역 (P 139)
- 해양관광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P 140)
- 학·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P 14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P 143)
- 공공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P 145)
-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 (P 146)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P 147)

[용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10. 6.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사업내용 : 하천제방 및 호안, 교량, 보, 접속도로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90,904	1,160,050	130,854	10.1%

주요 심사내용

- 감리원수 및 배치기준 조정
 - 배치기준에 따른 공종구분을 주요공사 내용으로 조정
 - 교량·하천제방공사 등을 감안한 보통공정 → 하천 제방공사의 단순공정
 - 감리원수 : 76.74인·월(보통공정) → 69.89인·월(단순공정)
 - ※ 조정내용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현지사무원 노임조정
 - 사무원 노임을 현실단가에 맞추어 제조부문 보통인부로 적용
 - 건설부문 보통인부(68,965원/일) → 제조부문 보통인부(49,430원/일)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적용의 적정성 여부
- 현장여건에 따른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용역]

재해위험지구 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1.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유수지정비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67,560	650,810	16,750	2.5%

주요 심사내용

- 감리용 현지차량 운행비 감액
 - 현지차량 운행비 : 15,224천원 → 0원
 - ※ 근거 : 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현지차량 지원 불필요

손해배상보험료 구간요율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균등요율 → 구간요율

구분	5억원 이하	5억원~10억원 이하
당초	순 용역금액×1.038%	
변경	순 용역금액×1.070%	순 용역금액×1.038%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적용의 적정성 여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적용 적정여부

[용역]

문화체험단지 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5.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 사업내용 : 산림 휴양지 조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865,745		1,689,930	175,815	9.4%

주요 심사내용

- 감리원수 산정을 위한 대상 공사비 조정
 - 공사비 : 순 공사비 + 부가가치세 → 순 공사비
 - ※ 근거 :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함

비상주 감리원 비율조정

- 비상주 감리원 : 총 감리원수의 90% → 85%

〈 비상주 감리원의 비율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비상주 감리원의 비율은 총 감리원수의
단순공종은 10%, 보통의 공종은 15%, 복잡한 공종은 20%가 원칙

cf) 감리 인원수(100%) = 상주 감리원 85%+비상주 감리원 15%

→ 주재비 : 상주 감리원의 30%, 출장비 : 비상주 감리원의 10%

상주 감리원 조정에 따른 주재비 조정

- 주재비 : 총 감리원수의 90%의 30% → 총 감리원수의 85%의 30%

비상주 감리원 조정에 따른 출장비 조정

- 출장비 : 총 감리원수의 10%의 10% → 총 감리원수의 15%의 10%

감리용 현지차량 운행비 감액

- 현지차량 운행비 : 15,224천원 → 0원

※ 근거 : 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써 현지차량 지원 불필요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외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조정 : 10% → 0%

· (순 용역금액 + 부가가치세) × 요율 → 순 용역금액 × 요율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적용의 적정성 여부
- 현장여건에 따른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6.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내용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68,000	323,700	368,000	12.0%

주요 심사내용

- 폐기물 운반비에 중복 계상된 일반관리비 감액
- 폐기물 운반비에 중복 계상된 이윤 감액
 - 건설폐물 수집·운반비 처리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한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에서 원가계산된 단가
-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조정
 - 폐콘크리트 : 17,921원/톤 → 16,239원/톤
 - 폐 아스콘 : 20,016원/톤 → 17,755원/톤

주요 착안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
- 물가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적용여부

[용역]

산성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5.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50,000	649,000	101,000	13.5%

주요 심사내용

현장 지형여건을 고려한 기술인원수 산정

구분	당초	변경	조정인원
- 지형	산지	평지(구릉지)	· 책임조사원 40인→33인 · 조사보조원 140인→124인 · 보조원 110인→90인 · 정리인원수 420인→228인
- 토질	어려운 경우	쉬운 경우	
- 조사조건	불량한 경우	양호한 경우	
- 유구식별 난이도	어려운 경우	쉬운 경우	
- 유구내용	어려운 경우	쉬운 경우	

※ 근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유물정리 인원수 조정 : 750인 → 501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한 정리 및 보고서 참여인원수는 연 조사 인력수의 0.4배

현장 지형여건을 감안한 지형계수 반영

- 현장인부 인원수 : 2,245명 → 1,368명

구 분	표토작업	유규굴삭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 토 질		1.5 → 0.7	1.5 → 0.7		
· 조사조건	1.2 → 0.8			1.2 → 0.8	1.2 → 0.8
· 유구식별 난이도		1.1 → 0.9	1.2 → 0.8		
· 유규내용				1.1 → 0.8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 조정

- 책임감리원 등 숙박비 40,000원/일 → 30,000원/일

※ 근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 조사단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

현장인부 퇴직적립금 삭제

- 현장인부 퇴직적립금 : 노임의 1/12 → 0

※ 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불필요

주요 착안사항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한 퇴직급여의 적정성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한 현장 적용여부

【용역】

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3.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사업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066,000	987,140	78,860	7.4%

주요 심사내용

- 대가기준 개정에 따른 제경비 및 학술료 조정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구분	조정내용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20%~130% → 100%~110%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30% → 20%~30%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10-8호, 2010.2.3

- 실거래 가격을 감안한 장비임차료 조정
 - 굴삭기(06m³) 520천원/일 → 388천원/일

주요 착안사항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한 대가 적용여부
- 원가계산을 위한 가격조사 실시여부

[용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5.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공연장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4,500		1,228,600	106,240	8.0%

주요 심사내용

- 중복 계상된 경관계획 노무비 미적용
 - 경관성 검토 조사인력 : 261인 → 0인
 - ※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경관 계획」의 노무비 미적용
- 과다 계상된 교통성 검토 대상면적 조정
 - 교통성 검토 조사대상 219,740㎡ → 106,266㎡(공유 수면부 제외)
- 공사 편입토지 조사비용의 정량화
 - 토지권리 및 지장물 조사 : 건적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15
- 현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측량비 조정
 - 지형현황측량 지형계수 조정

계 수	당초	변경	주 요 변 경 내 용
4급 기준점측량	0.69	0.54	- 기준 배점수 : 92점 → 63점 - 작업량 계수 : 1.13 → 1.28
수준측량	0.66	0.38	- 점당 평균거리 · 3급 : 400m → 200m · 4급 : 80m → 45m

※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형현황측량의 기준점 배점기준 적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평판측량 인력조정

종 별	작업인원(인)		종 별	작업인원(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고급기술자	4.25	3.75	초급기술자	15.0	11.5
중급기술자	15.00	11.25	초급기능사	7.0	7.0

주요 착안사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 지역 현장여건을 감안한 측량대가 산정여부

[용역]

도시계획정보 구축사업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4.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도시계획 정보화사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500,000		470,900	29,100	5.8%

주요 심사내용

- 표준시스템 설치비의 제경비 조정
 - 제 경 비 : 직접 인건비의 100% → 70%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제경비는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 이윤은 인건비+재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 미만
-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감액
 - 순용역비에 포함된 전산 운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감액

주요 착안사항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세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 비교견적에 의한 단가비교 및 적용의 적정성여부

[용역]

건축물 관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0 0
- 심 사 일 : 2010. 4.
- 사업규모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건축물관리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38,424		330,495	7,929	2.3%

주요 심사내용

- 청소용품에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조정
 - (순 재료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 순 재료비 + 부가가치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자격수당 조정
 - 자격수당

(단위 : 천원/월)

구 분	시설과장	전기주임	기계주임	비 고
조정금액	150 → 30	100 → 30	100 → 30	

주요 착안사항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세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 견적에 의한 단가비교 및 적용의 적정성여부

[용역]

폐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4.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01,073		560,118	40,955	6.8%

주요 심사내용

- 현지 여건을 감안한 측량지형계수 조정
 - 2급 수준점 측량 지형계수 : 1.3(산악지) → 1.0(평지)
 - 2급 기준점 측량 지형계수 : 1.2(산악지) → 1.0(평지)
 - ※ 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으로써 평지 지형계수로 조정

토질조사비 적용인력 직종변경

- 지반조사 표준품셈 적용인력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인력

(단위:원)

당 초		변 경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중급기술자	174,482	중급기술자	174,482
고급기능사	130,603	보 링 공	88,782
중급기능사	134,427	특 별 인 부	84,404
초급기능사	106,708	보 통 인 부	68,965

표준관입 시험비 적용인력 직종변경

- 지반조사 표준품셈 적용인력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인력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점	토	49,920	24,802	· 고급기능사 → 보 링 공 · 중급기능사 → 특별인부 · 초급기능사 → 보통인부
사	질	64,576		
자	갈	96,558		
암	반	96,558		

「경인쇄 인쇄기준」에 의한 조판 생략비 감액

- 인쇄비 : 12,150원/면 → 7,000원/면

주요 착안사항

-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견적에 의한 단가비교 및 적용의 적정성여부

[용역]

교량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3.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사업내용 : 교량실시설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46,900		1,135,600	11,300	1.0%

주요 심사내용

- 토질조사 비용에 포함된 결과 작성비 및 기술료 감액
 - 표준품셈에 의한 천공 일위대가는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 포함
- 적용대가 변경 고시에 따른 제경비 조정
 - 문화재 지표조사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30% → 110%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 조정
 - 조사단장 45,000원/일 → 40,000원/일
 - 책임감리원 등 숙박비 40,000원/일 → 30,000원/일
 - ※ 근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 조사단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

주요 착안사항

-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견적에 의한 단가비교 및 적용의 적정성여부

【용역】

해양관광단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0 0
- 심사일 : 2010. 3.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사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82,900	1,137,730	45,170	3.8%

주요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조사 인력계산을 위한 면적할증계수 조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의 25만㎡ → 관광진흥법 기준 30만㎡
 - 조사인력조정

구분	조사인력(인)		할증계수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특급기술자	59	56	1.67	1.58	
고급기술자	96	91	1.67	1.58	
중급기술자	148	138	1.98	1.85	
초급기술자	82	77	1.98	1.85	

주요 착안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해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할증계수 적용 적정성 여부

[용역]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10. 3.
-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도로노선설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717,400	632,700	84,700	11.8%

주요 심사내용

- ▶ 현장 지형을 고려한 측량 일위대가 조정
 - 현지 여건을 감안한 노선측량 적용기준

구분	측량 적용 기준	조정금액(km당)
당초	· 농지 · 구릉 80% + 산지 20%	10,599천원
변경	· 농지 · 구릉 100%	8,016천원

※ 「계획 평면도」를 확인한 결과 설계 노선구간이 구릉지와 논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 측량은 불필요

- ▶ 실시설계시 과다 계상된 측량대가 조정

구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적용인력	11.0 → 1.0	30.0 → 3.0	33.0 → 6.0	20.0 → 0.0
측량내용	토지 등기부 지적 또는 소유권 조사 측량(실시설계시) ▶ 지적도 정리 : 공공용지 확정측량 등은 공공 측량기관에서 측량			

 토질조사 비용에 포함된 결과 작성비 및 기술료 감액

- 표준품셈에 의한 천공 일위대가는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 포함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및 기반조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현장 지형을 고려한 측량대가 산정여부

[용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12.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3km, 배수펌프장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60,720	328,400	132,320	28.7%

주요 심사내용

- 과다 계상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정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효율의 1.4배 → 1.0배
 - ※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관리청에서 기 수립
- 표준품셈 적용오류에 의한 대가 조정
 - 중복 계상된 기술료 감액 : 30% → 0%(일위대가 품에 기 산정)
 - 표준품셈에 의한 지질조사(보링) 인력품 조정

(단위 : 인/m)

구분	중급기술자	보링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점토층	0.20 → 0.18	0.50 → 0.35	0.50 → 0.25	0.50 → 0.35
풍화암	0.20 → 0.19	0.40 → 0.35	0.40 → 0.39	0.40 → 0.35
연암층	0.20 → 0.21	0.40 → 0.37	0.40 → 0.28	0.40 → 0.37

설계도 트레싱 원도 매수 감액

- 설계도서 : 1,500장 → 보관용 100장(1부)

※ 보관용 : 트레싱 원도 1부, 기타 현장용은 백도로 인쇄

사전환경성 검토비 적용기준 변경

- 산정방법 : 환경영향평가 산정기준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 폐기물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시 불필요한 조사항목 삭제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의한 사전재해성 검토비 재조정

(단위 : 인)

구 분	당 초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기 술 사	8.94	4.75	중급기술자	34.40	11.37
특급기술자	15.82	6.73	특급기술자	46.60	13.46
고급기술자	22.60	10.40	중급기능사	31.50	13.84

문화재청이 고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대가 적용

- 적용방법 : 견적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및 기반조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현장 지형을 고려한 측량대가 산정여부

【용역】

공공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11.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사업내용 :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00,000	802,000	98,000	10.9%

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에 포함된 제경비 및 기술료 감액 (2.2.2.2.2)
 - 배수설비조사 : 제경비 110% → 0%, 기술료 20% → 0%
- 토질조사비의 시험비에 포함된 제경비 감액
 - (조사비+시험비) × 제경비(25%) → 조사비 × 제경비(25%)
- 발주청에서 제공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비 감액
 -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및 개발 계획서 : 용역사 → 발주처 제공
- 「경인쇄 인쇄기준」에 의한 조판 생략비 감액
 - 인쇄비 : 12,150원/면 → 7,000원/면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및 기반조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 현장 지형을 고려한 대가적용 여부

[용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10. 1.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내용 : CCTV촬영 L=3.7km, 수밀시험 842개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56,450	358,600	97,850	21.4%

주요 심사내용

- 과다 계상된 하수관거 CCTV 조사비용 조정
 - CCTV 조사시 불필요한 S/W 시험사 제외
 - 잡재료비 : 노무비의 20% → 재료비의 5%
- 기계장비 성능을 감안한 수밀시험비 조정
 - 수밀시험기 사용가능 횟수 : 15회 → **30회(지점당 0.067EA → 0.033EA)**
 - 공기압축기 운용인력 : 건설기계운전사 → 일반기계운전사
 - ※ 건설기계운전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
 - ※ 일반기계운전사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원치 등 경기계 조정원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대가기준 준수 여부
- 지침에 따른 분리발주 여부
 - CCTV 검사 및 수밀 검사는 분리 발주 또는 공공하수관리청이 직접 검사

【용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10. 1.
- 사업규모
 - 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내용 : 하수도대장작성 5.37km², 하수관거조사 67.57km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55,000	711,480	143,520	16.8%

주요 심사내용

- 지형 유형에 따른 측량보정계수 조정
 - 보정계수 : 시가지(1.2) → 구릉지(1.1)
 - 맨홀조사비 조정 : 286,235원/km → 95,531원/km
- 「경인쇄 인쇄기준」에 의한 조판 생략비 감액
 - 인쇄비 : 12,150원/면 → 7,000원/면

주요 착안사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에 의한 대가기준 준수 여부
- 현지여건을 감안한 측량대가 적정성 여부



5. 물품제작 구 입

목 차

- 컬러 초음파 진단기 구입 (P 151)
- 건물번호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 (P 152)
- 통합 방송장비 구입 (P 153)
- 천변 영상장치 제작·설치 (P 154)
- 손 소독제 구입 (P 155)
- 냉난방기 구입 (P 156)
-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 (P 157)
- 행정선 대체선박 건조 (P 158)
-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P 159)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P 160)
- 의료장비 구입 (P 161)
- 도서관리 운영서버 및 백업시스템 구입 (P 162)

[물 품]

컬러 초음파 진단기 구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09. 6.
- 사업규모
 - 물 품 명 : 컬러 초음파 진단기 1식 구입
 - 사 업 비 : 243,00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43,000	210,000	33,000	13.6%

주요 심사내용

- 컬러 초음파 진단기 단가 조정
 - 기본 품목에 옵션 추가로 가격 상승
 - ※필립스 광주·전남 영업점 : 대성 메딕스사
- 의료원에서 자체 의료장비 구입심의위원회 개최
 - 메디슨사, GE사, 필립스사 등 3개사 제품 중 필립스사 물품 결정(중대형 병원에서 대다수 사용)
- GE사 초음파 진단기(E9)는 사용 미검증으로 의료진에서 부담(부정적)

주요 착안사항

- 3개사 제품 중 우수 회사제품 선택
- 장비는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적용

【물품제작】

건물번호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6.
- 사업규모
 - 물품명 : 건물번호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
 - 사업비 : 442,09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42,090		351,200	90,890	20.6%

주요 심사내용

- 안내판 및 건물번호판 노무비 조정
 - 요청액 89,061천원 → 조정액 59,381천원(△29,680천원)
 - '09년 정부 노무비 단가 적용 (공사부문)
- 사급자재비(알루미늄판 등) 단가 조정
 - 물가정보지 가격 적용
 - 238,370천원 → 198,014천원(△40,436천원)
- 관리비 및 이윤요율 조정
 - 관리비(제조) 7% → 3%, 이윤(제조) 25% → 15%

주요 착안사항

- 제작은 제조노무비 적용, 설치는 공사노무비 적용
- 시방서, 설계도서, 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물 품】

통합 방송장비 구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09. 7.
- 사업규모
 - 물 품 명 : 통합방송장비(블루 몬스터) 구입
 - 사 업 비 : 38,50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8,500	36,960	1,540	4.0%

주요 심사내용

- 요청한 규격 조사결과 (주)조아 영상기술에서 제조한 제품 반영
 - 00시 의회에서 타 기종과의 차별성으로 특정사양 요구
 - 기존제품의 호환성과 특수성을 요구하는 제품 반영
- 통합방송 송출시스템(블루몬스터) 단가 조정
 - 요청액 38,500천원 → 36,960천원

주요 착안사항

- 회의시 고정된 전체화면만 제공하던 것을 질문 및 답변자 동시 송출 가능한 시스템 구입
- 구입계획 기종을 타 지자체에서도 다수 사용(서울, 인천의회 등)

【물품제작】

천변 영상장치 제작·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09. 12.
- 사업규모
 - 물품명 : 영상장치 구입 및 설치(음향, 레이저, 영상)
 - 사업비 : 686,069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86,069	603,524	82,545	12.0%

주요 심사내용

- 사급물품 단가조정
 - 스피커 메니저 7,800천원 → 3,054천원(△4,746천원)
- 경비항목 일부 미적용
 - 완성품 구입으로 외주가공비, 세금과공과 미적용
- 관리비 및 이윤 요율 조정
 - 관리비(제조) 7% → 3%(경비에 필요한 제경비 반영으로 감액)
 - 이윤(제조) 25% → 15%

주요 착안사항

- 공사설계서로 물품계약심사를 요청한 것을 물품제조 설계서로 완한 다음에 물품원가심사 실시
- 완성품 자재 구입으로 제경비 미반영

【물 품】

손 소독제 구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과
- ☞ 심 사 일 : 2009. 12.
- ☞ 사업규모
 - 물 품 명 : 손 소독제 구매(신종 인플렌자 등 전염병 예방)
 - 사 업 비 : 335,00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35,000		292,500	42,500	12.7%

주요 심사내용

- ☞ 손 소독제 단가 조정
 - 1ℓ 단가 8,000원 → 7,000원(5,000개)
 - 500ml 단가 4,000원 → 3,500원(65,000개)
 - 50~55ℓ 단가 700원 → 600원(50,000개)

주요 착안사항

- 가격조사 : 5개업체(용량별 최저단가 적용)
 - 대정메디컬, 유달약품, 성림, 경동메디칼, 남경메디칼
- 손 소독제 제품을 여러업체에서 생산하여 가격하락

【물 품】

냉난방기 구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10. 4.
- 사업규모
 - 물 품 명 : 의회청사 냉난방기 구입
 - 사 업 비 : 133,268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268	127,279	5,989	4.5%

주요 심사내용

- 배관 커버트레이 노출배관 수량 조정
 - 150조(6,750원) → 20조 소요(900천원)립스의 초음파 진단기
- 천장형 냉난방기(실외기 0.8HP)최저가 적용
 - 542천원 → 403천원(△139천원)
- 냉매관 설치 5종 : 나라장터 가격조사 결과 차이 없음

주요 착안사항

- 냉각탑 철거비용을 조달단가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계약심사에 따른 물품구매가격 및 수량수정후 사업 발주

【물 품】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12.
- 사업규모
 - 물 품 명 : X-RAY 촬영장치 등 20종
 - 사 업 비 : 121,592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21,592	108,453	13,139	10.8%

주요 심사내용

- 혈액 화학분석기 단가조정
- 심장충전기 단가조정
- 체위변환 욕창예방 치료매트 단가조정
- 원심분리기 등 13종 단가조정

주요 착안사항

- 사)물가협회 및 사)물가정보에서 조사가격 중 최저가 단가적용

【물품제작】

행정선 대체선박 건조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09. 8.
- ▶ 사업규모
 - 물 품 명 : 행정선 대체선박 건조
 - 사 업 비 : 1,165,00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65,000	1,040,324	124,676	10.7%

주요 심사내용

- ▶ 노무비 인력 품 조정
 - 보통인부 인원수 조정 : 720명 → 480명 (△242명)
 - ※조선목공 등 전문 인력품에 이중 계상된 단순인력 조정
- ▶ 선체공사에 누락된 도장공, 피막공 반영
- ▶ 주요기자재 단가 조정
- ▶ 관리비 요율조정(관리비가 경비에 포함)

주요 착안사항

- 도내에서 본 설계서와 동일한 형태 행정선 5척을 건조
- 일괄 설계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보완후 건조

【물품제작】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09. 10.
- ▶ 사업규모
 - 건명 :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 사업비 : 254,181천원
 - 구매시기 : 계약후 4개월 이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4,181		223,541	30,640	12.1%

주요 심사내용

- ▶ 설치비 자재(접착제)단가 조정
 - 요청액 18,000원 → 10,300원(△7,700원, △42.7%)
- ▶ 사급자재 관리비 및 이윤 요율조정
 - 관리비 요율 7% → 3% (경비에 필요한 제경비 반영으로 감액)
 - 이윤요율(제조) : 25% → 15%

주요 착안사항

- 안내판 및 번호판 제작은 제조품을 사용하고 설치는 공사품 적용
- ※ 지역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수의계약 예정(미정)

【물 품】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 구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군
- ▶ 심 사 일 : 2010. 1.
- ▶ 사업규모
 - 물 품 명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 H/W(중형컴퓨터 1식), S/W(DBMS 1식, GIS엔진 등)
 - 사 업 비 : 249,70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49,700		234,300	15,400	6.2%

주요 심사내용

- ▶ 서버(주 전산기) 단가조정
 - 100,500천원 → 96,000천원(△4,500원)
- ▶ 스토리지(저장장치) 단가조정
 - 48,500천원 → 43,000천원(△5,500원)
- ▶ DBMS 단가조정
 - 47,000천원 → 43,000천원(△4,000원)

주요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 검토 결과 미국의 IBM제품사양(발주부서 요구)
 - 기존 시스템과 호환 및 차후관리 용이하여 선호
- 건설부 산하사업단 KLIS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계상

【물 품】

의료장비 구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 0 시
- ▶ 심 사 일 : 2010. 1.
- ▶ 사업규모
 - 물 품 명 : 의료장비(복강경 및 관절경) 구입
 - 사 업 비 : 99,000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9,000		81,900	17,100	17.2%

주요 심사내용

- ▶ 의료장비(복강경 및 관절경 시스템) 단가조정
 - 99,000천원 → 81,900천원 (△17,100원)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절경 의료장비는 복강경 기능 없음
 - 복강경과 관절경 겸용 의료장비 구입
- ▶ 의료기 상사 견적내용
 - 동양의료기 81,900천원, 한라메디칼 95,000천원, 유디메디칼 99,000천원

주요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시방서)가 제시하는 동등 이상 규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적용 여부
- 특정 및 공통사양 여부

【물 품】

도서관리 운영서버 및 백업시스템 구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10. 3.
- 사업규모
 - 물 품 명 : 도서관리 운영서버 및 백업시스템 구축사업
 - 사 업 비 : 102,353천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02,353	93,758	8,595	8.4%

주요 심사내용

- 도서관리 서버 단가조정
- 웹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단가조정
- 백업장치, 백업소프트 웨어 등 단가조정
- 네트워크 시설공사 단가조정
 - 부실공사 예방 및 현 공정에 적정토록 시중 단가적용

주요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에 제시하는 동등이상 규격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적용 여부
- 특정 및 공통사양 여부



6. 2009(상반기) 주요심사

목 차

-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P 165)
- 주거 환경개선사업(P 167)
- 시가지 배수펌프장 신설 공사(P 169)
- 예술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P 171)
- 전통 문화재 복원 공사(P 172)
- 오일시장 이설 현대화사업(P 174)
-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P 175)
- 재래시장 이설 및 현대화 사업(P 177)
-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P 178)
- 생태하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P 179)
- 하수관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 181)
- 소형 어선 다목적 인양기 제작(P 182)
- 건물번호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P 183)

【토목공사】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4.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주요내용 : 선형개량 L=0.78km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68,283		1,911,439	656,844	25.6%

주요 심사내용

- 암석 절취 발파방법 조정
 -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12,539원/㎡) → 일반발파(5,581원/㎡)
 - ※ 근거 : 현지여건을 조사하여 발파방법 변경
- 중복 계상된 교량 난간 자재비 조정
 - 자재비(44,478천원) 중복 계상
- 토공 비탈 기준틀 설치 품 조정
 - 건축목공 0.2인/㎡ → 0.16인/㎡, 보통인부 0.2인/㎡ → 0.14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로폼 조립 및 해체 품 조정

- 보통인부 $0.045\text{인}/\text{m}^2 \rightarrow 0.054\text{인}/\text{m}^2$, 형틀목공 $0.103\text{인}/\text{m}^2 \rightarrow 0.096\text{인}/\text{m}^2$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암석 절개면 보호(녹생토) 취부공 품 조정

- 녹생토 $0.11\text{m}^2 \rightarrow 0.077\text{m}^2$, 종자 $0.12\text{kg}/\text{m}^2 \rightarrow 0.084\text{kg}/\text{m}^2$
- 취부자(녹생토) $0.08\text{hr}/\text{m}^2 \rightarrow 0.06\text{hr}/\text{m}^2$
- 작업반장 $0.008\text{인}/\text{m}^2 \rightarrow 0.006\text{인}/\text{m}^2$, 특별인부 $0.035\text{인}/\text{m}^2 \rightarrow 0.027\text{인}/\text{m}^2$
- 건설기계운전자 $0.008\text{인}/\text{m}^2 \rightarrow 0.006\text{인}/\text{m}^2$, 보통인부 $0.07\text{인}/\text{m}^2 \rightarrow 0.052\text{인}/\text{m}^2$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철근 가공 및 조립 시공방법 조정

- 현장가공 + 현장조립 $\rightarrow$ 공장가공 + 현장조립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가설 창고(1년이상) 설치 품 조정

- 보통인부 $0.15\text{인}/\text{m}^2 \rightarrow 0.1\text{인}/\text{m}^2$, 건축목공 $0.3\text{인}/\text{m}^2 \rightarrow 0.23\text{인}/\text{m}^2$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현장 여건에 따른 적용장비와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토목공사】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3.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
 - 주요내용 : 흙막이 3,242m³, 순성토 2,869m³, 배수공 1,053m
옹벽공 523m, 상수공 1,565m 등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993,200		1,662,100	331,100	16.6%

주요 심사내용

- 사토운반거리 조정
 - 운반거리 : 5km → 1km
 - ※ 근거 : 양각지구 사토 물량을 객사지구 순성토량으로 활용
- 주거지역 담장철거품 조정
 - 인력철거 100% → 기계철거(굴삭기 0.7m³급)
- 펌프카(Q=80m³/hr) 타설품 조정
 - 콘크리트공 0.11인 → 0.049인, 보통인부 0.09인 → 0.024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강관동바리 설치품 조정

- 비계공 0.1인 → 0.08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현장사무실 설치품 조정

- 건축목공 0.4인 → 0.3인, 보통인부 0.2인 → 0.12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비탈 및 수평규준틀 설치품 조정

- 비탈 : 건축목공 0.20인 → 0.20인, 보통인부 0.20인 → 0.14인
- 수평 : 건축목공 0.15인 → 0.30인, 보통인부 0.20인 → 0.19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착안사항

- 현장 사토 발생토량 활용 여부
- 현장여건에 따른 적용장비와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토목공사】

시가지 배수펌프장 신설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09. 3.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옥내변전소, 동력제어, 건축전기, 계측제어설비 등
- 발주유형 : 전기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090,200		1,878,021	212,179	10.2%

주요 심사내용

- 주요자재 구입 단가조정
 - 강제전선관 및 난연케이블 등 구입단가 조정
 - 전등설비 조명기구 구입단가 조정
 - ※ 근거 : 시중 거래가격 적용
- 맨홀 및 핸드홀 설치품 조정
 - 현장 조립 및 시공기준 노무비 → 기성품 시공 노무비
 - ※ 근거 : 현장여건 적용
- 옥내 변전소설비 판넬지지대 설치품 조정
 - 옥내 변전소설비 판넬지지대 설치품 계상 → 설치품 제외(단가에 설치비 포함)
 - ※ 근거 : 자재단가 적용여부 및 설치품 확인

자기수축 단말처리제 설치품 조정

- 23kV 1C/60mm²(m당) 특별고압 케이블공 2.65인 → 1.135인
- 6.9kV 1C/400mm²(m당) 고압 케이블공 4.41인 → 1.764인
- 6.9kV 1C/70mm²(m당) 고압 케이블공 2.13인 → 0.852인

※ 근거 : 전기·정보통신 표준표셈

워터캡 엔트런스 설치품 변경

- 설치품 조정 : 배전전공 → 내선전공

※ 근거 : 전기·정보통신 표준표셈

조명기구 설치품 변경

- 슬림형 형광등 조정 : 매입등품 → 적부등품

※ 근거 : 전기·정보통신 표준표셈

주요 착안사항

- 현장여건 적정 반영여부
- 주요자재 구입단가 적정여부
- 전기통신 표준품셈 적용여부

[건축공사]

예술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09. 5.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주요내용 : 옥외화장실, 스탠드 데크설치, 외부담장쌓기 등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388,624		366,963	21,611	5.6%

주요 심사내용

- 자재비 중복계상 조정
 - 벽돌치장 재료비(시멘트, 모래) 조정
- 잡철물 설치 노임 직종 변경
 - 잡철물 제작 및 조립 : 철공 → 철판공
- 수량산출 착오 계상 조정
 - 미장벽돌 쌓기 이중계상으로 조정(4,000매)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 각 공종별 자재비 중복계상 여부
- 노무비 직종 적정 적용여부

【건축공사】

전통 문화재 복원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시
- 심사일 : 2009. 6.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 주요내용 : 문루, 육축, 옹성, 여장 등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499,651	2,319,870	179,781	7.2%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 인력 및 수량 조정
 -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 비계공 0.62인 → 0.56인
 - 강관비계 매기 : 비계공 0.1인 → 0.08인
 - 강관비계 매기 수량 : 518m² → 456.7m²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터파기 및 잔토처리 인력 및 운반거리 조정
 - 터파기 : 보통인부 0.235인 → 0.23인, 작업반장 0.235인 → 0.23인
 - 잔토처리 사토장 거리조정 : 20km → 10km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석축공사 인력 및 수량 조정

- 자연석 석축 측구 설치 : 자연석 쌓기 $1.6\text{m}^3 \rightarrow 1.2\text{m}^3$
 - 자연석 육축계단 설치 : 자연석 쌓기 $12.71\text{m}^3 \rightarrow 3.23\text{m}^3$
 - 성곽돌 해체 : 목도공, 특수인부 조정(석공사 쌓기 노임 불인정)
 - 자연석 쌓기 : 석공 1.2인 $\rightarrow$ 0.6인, 보통인부 0.9인 $\rightarrow$ 0.45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자재대 단가 조정

- 목재(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그을림 한식 기와(여와, 부와, 막새, 용두) 등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및 견적단가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 현지여건을 감안한 공종 적용여부
- 2009 정부노임단가 적용여부

【기계공사】

오일시장 이설 현대화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2
- 사업규모
 - 공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장옥 76동,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 등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일괄발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08,923		84,892	24,031	22.1%

주요 심사내용

- 배관공사 수량 조정(재료비, 노무비 이중계상)
 - PE관 접합 및 부설공사 이중계상에 따른 중복수량 삭제
- 장옥 옥외 및 급수배관공사 인부 인원 조정
 - 옥외배관 및 급수배관공사 부설에 따른 배관공 및 보통인부 30%감 적용
 - ※ 근거 : 기계설비 표준품셈 적용

주요 착안사항

- 인건비, 주요자재 중복여부 파악
- 표준품셈 적용여부 검토

【기계설비】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2.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건축연면적 5,600㎡(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1,800석)
- 발주유형 : 기계설비(건축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05,920		1,171,825	134,095	10.3%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조기(실내기) : 거래실례가격 적용
 - 물탱크(SMC 110톤) : 조달청 가격 적용
 - ※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적용
- 세이크 항균덕트 설치품 조정
 - 덕트공(㎡) 0.4인 → 0.3인
- 잡철물 제작설치품 조정
 - 잡철물 제작설치 작업조건 조정 : 보통 → 간단
 - ※ 근거 : 기계설비 표준품셈

무대장치 설치 중량 조정

- 무대장치 중량에 커튼 중량 제외(불인정)
※ 근거 : 현장여건 및 중량 산출내역 검토

사급자재 관급으로 전환

- 체육관내 공조기(실내 및 실외)가 관급 및 사급으로 분리발주 설계된 것을 일괄 관급전환
※ 근거 : 현장여건 감안

주요 착안사항

- 자재단가 거래실례가격 적용여부
- 기계설비 표준품셈 적용여부
- 설비공사 중량 산출내역 적정여부
- 현장여건 및 유지관리 감안여부

[기계설비]

재래시장 이설 및 현대화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2.
- 사업규모
 - 공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장옥 76동,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 등
- 발주유형 : 기계공사(건축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08,923		84,892	24,031	22.1%

주요 심사내용

- 배관공사 수량 조정(재료비, 노무비 이중계상)
 - PE관 접합 및 부설공사 이중계상에 따른 중복수량 조정
- 옥외 및 급수배관공사 인력품 조정
 - 옥외배관 및 급수배관공사 매설에 따른 배관공 및 보통인부 30% 조정
 - ※ 근거 : 기계설비 표준품셈

주요 착안사항

- 인건비, 주요자재 중복 적용여부
- 기계설비 표준품셈 적용여부

[용역]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3.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계획수립, 지하시설물 조사, 정수시설 기술진단 등
- 발주유형 : 일반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00,000		1,095,000	205,000	15.8%

주요 심사내용

- 기본계획 대상인구에 대한 보정계수 조정
 - 지역 총 인구(보정계수 0.991) → 급수지역 인구(보정계수 0.771)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비 조정 : 22.40인/㎞ → 5.77인/㎞
 - 하수도 관망도 등 기존 지하매설물 대장 활용
 - ※근거 : 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

주요 착안사항

- 현지여건을 감안한 공종 적정여부
- 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 적정여부

[용역]

생태하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4.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L=4.5km)
- 발주유형 : 기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648,700		586,700	62,000	9.6%

주요 심사내용

-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시 길이에 대한 보정계수 반영
 - 면적 보정계수는 반영, 길이 보정계수 미반영
 - 길이보정계수 : 0 → 0.45
 - ※근거 : 수자원 개발 표준품셈
- 사전환경성검토 단가산정 보정계수 조정
 - 특급·고급기술자 인력품 100%(1.21) → 54%(0.54)
 - 중급·초급기술자 인력품 100%(1.45) → 65%(0.54)

(단위 : 인)

구 분	길 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준규모	10.0km	1.21	1.21	1.45	1.45
보정계수	4.5km	0.54	0.54	0.65	0.6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불필요한 조사항목 조정

- 폐기물조사, 대안설정 및 평가서 작성 등 조사항목 삭제
- ※근거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가 산정시 불필요한 조사항목 조정

- 시설입지선정 타당성 검토 조사항목 삭제
- ※근거 : 방재분야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료 구간요율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 균등요율 → 구간요율

구 분	5억원 이하	5억원~10억 이하
당 초	순 용역금액×1.268%	
변 경	순 용역금액×0.980%	순 용역금액×0.951%

※근거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주요 착안사항

- 면적 및 길이 조사항목의 보정계수 분리 적용 여부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적용여부
- 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용역]

하수관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사일 : 2009. 6.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주요내용 : 측량(L=37km), 현지조사, 실시설계 등
- 발주유형 : 기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40,100		757,500	182,600	19.4%

주요 심사내용

- 직접 경비에 포함된 제경비 및 기술료 조정
 - 현장조사 제경비 : 30% → 0%
 - 지질조사 기술업무 제경비 : 115% → 0%
 - 지질조사 기술업무 기술료 : 30% → 0%
- ※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주요 착안사항

- 직접경비에 포함된 제경비 및 기술료의 적정 계상 여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정여부

【물품제작】

소형 어선 다목적 인양기 제작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9. 2.
- 사업규모
 - 제작기간 : 3개월
 - 주 요 내 용 : 인양기 5기 제작, 기당 인양능력 7.5톤
- 발주유형 : 물품제조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3,000		226,436	26,564	10.5%

주요 심사내용

- 노무비 인력품 조정(건설공사 → 물품제조)
 - 시공측량사, 프랜트기계 설치공, 비계공 등 건설공사 인력품 불인정
 - ※ 근거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소기업중앙회)
-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반영
 - ※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법률 제14조 등

주요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시방서)와 설계, 도면 불일치 여부
- 공종별 제조인력품 적용 여부
- 법정 의무 보험료 등 반영 여부

【물품제작】

건물번호판 및 안내판 제작 설치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9. 6.
- 사업규모
 - 설치기간 : 6개월
 - 주요내용 : 안내판 14개, 건물번호판 20,824개소
- 발주유형 : 물품제조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42,090		351,200	90,890	20.6%

주요 심사내용

- 설치 노임 단가 조정 : 현장노임 → 시중노임
※근거 : 2009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 노임단가
- 사급자재 단가 조정 : 견적단가 → 물가정보지 단가
 - 알루미늄판(260×215×1.5t) : 2,300원 → 1,600원
- 관리비 요율 조정 : 7% → 3%
 - 경비항목에 관리비 계상 항목이 포함되어 조정

주요 착안사항

- 제조 및 설치 노임 적정여부
- 주요자재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여부
- 관리비항목과 경비항목 이중계상여부



7. 2008(하반기) 주요심사

목 차

- 소규모 마을 하수도시설 공사(P 187)
- 해안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P 189)
- 지방어항 시설 공사(P 191)
- 문화광장 조성사업(P 193)
- 아름다운 동산 공원화 사업(P 195)
- 쉬어가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P 197)
-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P 199)
- 중앙로 간판문화 개선사업(P 200)

【토목공사】

소규모 마을 하수도시설 공사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08. 10.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주요내용 : 하수처리시설 $Q=40\text{m}^3/\text{일}$, 오수관로 $L=2.3\text{km}$
-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813,400		703,000	110,400	13.6%

주요 심사내용

- ☞ 레미콘타설 인력품(m^3 당) 조정
 - 무근 구조물 : 콘크리트공 0.15인 → 0.12인, 보통인부 0.27인 → 0.15인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 관로 터파기(굴삭기 0.4m^3 급) 시공조합 조정
 - 기계(80%) + 인력(20%) → 기계(90%) + 인력(10%)
 - ※ 근거 : 현장여건 반영, 시공조합 조정으로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 적용
- ☞ 쇄석 운반거리 조정($L=37.5\text{km} \rightarrow 19\text{km}$)
 - ※ 근거 : 인근 골재원으로 위치변경 조정

SK 판넬 가시설 설치계수 조정

- 계수조정 : $K = 0.7 \rightarrow 0.9$, $E = 0.45 \rightarrow 0.6$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준용

아스콘 깨기(굴삭기 0.7㎥급+대형브레이커) 작업량 조정

- 작업량 $5.9\text{m}^3/\text{hr} \rightarrow 7.7\text{m}^3/\text{hr}$

※ 근거 : 콘크리트 깨기 작업량을 아스콘 깨기로 조정

자재단가 조정

- 철근고재 : 200,000원/톤 $\rightarrow$ 645,000원/톤
- 컨테이너(3*9*2.6) 사무실용 : 3,500,000원/동 $\rightarrow$ 2,500,000원/동
- 컨테이너(3*9*2.6) 창고용 : 2,700,000원/동 $\rightarrow$ 2,000,000원/동
- 하수도 자재 PVC 소켓 등 7종 단가 조정

※ 근거 :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단가 적용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현장여건에 따른 가시설(흙막이) 공법 적정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서조항 적용여부
-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와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토목공사】

해안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08. 11.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처리용량 90m³/일, 오수관로 3,884m, 가정관로 4,706m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377,900		1,207,580	170,320	12.4%

주요 심사내용

-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SK판넬 설치품 조정
 - 연간 표준 공용일수 : 150일 → 200일
 - 흙막이 조립, 박기 및 뽑기 작업반장 삭제 : 설치수량 소량
 - 보조 크레인 : 주 크레인의 60% → 40% 적용
 - 버팀보 철거 설치품 조정 : 비계공 3인 → 1.5인, 철골공 1인 → 0.5인
- 모래, 쇄석, 잡석 중기 운반료 경비항목으로 조정
- 씨트파일 가이드 빔 이동설치 : 30회/일 → 40회/일
- 사무실, 숙소(12개월 미만-조립식) 면적 조정 : 260㎡ → 150㎡

SHEET PILE 우각부 연결 및 해체 자재 단위수량 조정

- 열연강판 (T=15mm) : 10.597kg → 8.4776kg
- 열연강판 (T=10mm) : 12.41kg → 9.928kg
- 강판절단 (T=12mm수동) : 4.82m → 3.856m

레미콘 타설품 조정

- 소형 기계 : 보통인부 0.42인 → 0.30인
 - 철근 기계 : 콘크리트공 0.17인 → 0.14인, 보통인부 0.29인 → 0.16인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분 반영

가시설물 비계 설치품 조정

- 강관비계 0.2394m → 0.0798m, 이음철물 0.06EA → 0.02EA
- 조임철물 0.2496EA → 0.0832EA, 철물 0.04EA → 0.01EA
- 비계공 0.1인 → 0.03인

가시설물 동바리 설치품 조정

- 강관 동바리 0.0228본 → 0.0076본, 잡자재 5% → 3%
- 형틀목공 0.077인 → 0.026인, 보통인부 0.055인 → 0.018인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변경사항 적용여부
- 가시설물 사용일수 및 손료, 설치수량 적정 여부
- 현장사무실 및 창고 적정 면적 산출 여부

【토목공사】

지방어항 시설 공사

사업개요

요청기관 : 00 군

심사일 : 2008. 12.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주요내용 : 방파제 160m, 물양장 3개소, 선양장 2개소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2,577,970	2,173,110	404,860	15.7%

주요 심사내용

사석, 침하사석, 피복석 투하 공사비 조정

- 사석 투하(수상, 수중) : 20%할증 → 0%

- 피복석 투하(수상, 수중) : 15%할증 → 0%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보조기층(쇄석) 할증 반영

- 물양장 보조기층(쇄석) : 0% → 4% 할증 추가 반영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PC암거 운반거리 조정

- 운반거리 : 180km → 80km
- ※ 근거 : PC암거 구매가 가능한 가까운 공장 적용

T.T.P 제작 콘크리트 타설 방법 변경

- 레미콘(무근) 타설 21,514원/m³ → 펌프카(무근) 타설 9,965원/m³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피복석 및 사석 운반 단위중량 조정

- 피복석, 사석 : 2.6톤/m³ → 2.0톤/m³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T.T.P(5톤급) 운반 및 거치(수상, 수중) 중장비 규격 조정

- 크레인 : 25톤 → 10톤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 자재단가의 적정 계상여부
- 현장여건에 따른 적용 장비와 인력조합의 적정여부

[토목공사]

문화광장 조성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8. 11.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주요내용 : 점토블럭 2,152m³, 우레탄 685m³, 조정시설공, 바닥분수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673,180	1,460,800	212,380	12.7%

주요 심사내용

- 사토처리(토사) 운반거리 조정 : L=5.0km → 3.0km
- 슬라브 건물철기 작업량 조정 : Q=2.45m³/hr → 4.6m³/hr
- PE원형맨홀(D900) 거꾸집 설치 및 해체품 조정
 - 슬라브, 기초 : 특별인부 0.16인 → 0.14인, 보통인부 0.45인 → 0.25인
 - 벽체 : 특별인부 0.20인 → 0.26인, 보통인부 0.60인 → 0.47인

자재단가 조정

- 시멘트 벽돌 : 50원/매 → 46원/매
- 석재타일 : 38,000원/㎡ → 36,000원/㎡
- 도기질 타일 : 13,000원/㎡ → 10,400원/㎡
- 화강석 판석포장 : 30,000원/㎡ → 22,000원/㎡
- 양변기(장애우용) : 420,000원/개 → 275,000원(조달가격)
- 양변기(절수형) : 85,000원/개 → 81,000원(조달가격)

점토블럭 포장 설치품 조정

- 특별인부 0.061인 → 0.013인, 보통인부 0.07인 → 0.027인

주요 착안사항

- '08년 하반기 변경 노임단가 적용여부
- 사토 운반거리 실측거리 적용여부
- 소요자재 거래실례가격 적용여부
- 공사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량 산정여부

【토목공사】

아름다운 동산 공원화 사업

사업개요

- ☞ 요청기관 : 00 군
- ☞ 심사일 : 2008. 11.
-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공원 조성면적 A=33,620m²
-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851,780		1,583,818	267,792	14.5%

주요 심사내용

- ☞ 토공유용 계획 조정
 - 사토 (1,350m³)를 공원 예정부지의 순성토 토사로 유용 조정
 - ※근거 : 현지여건을 감안
- ☞ 콘크리트 깨기 노임 단가 조정
 - 보통인부 : 81,596원 → 63,530원
 - ※근거 : 2008년 하반기 사중 노임단가 적용
- ☞ 조경수목 단가 조정
 - 상록수 및 관목류 15,533주에 대하여 가격정보 단가로 조정
 - ※근거 : 물가정보지 단가

인공암 벽천설치 품셈 적용 : 견적 → 표준품셈

- 돌쌓기 방법 변경 및 발전기 사용량 조정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황토 포장(841㎡) 자재대 조정

- 관급자재대와 일위대가에 중복 계상(일위대가 자재대 조정)

조경 시설물 단가 조정

- 파고라에 대하여 물가정보지 최저 단가 적용

※ 근거 : 물가정보지 단가

관급자재 수량 및 자재대 누락분 반영

- 산책로 탄성 포장재의 자재대(60,946천원)가 누락되어 반영

주요 착안사항

- 토공 유용계획 및 노무비 적정여부
- 조달청 가격 및 시중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여부
- 수량 산출 적정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건축공사】

쉬어가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군
- 심 사 일 : 2008. 9.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체험센터, 산촌웰빙센터, 집하장, 공중화장실 등
- 발주유형 : 건축공사(토목공사 포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1,101,588		1,013,360	88,228	8.0%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 비계공법 조정
 - 내부 말비계 → 이동식 강관말비계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합판거푸집 손료 조정
 - 3회 → 5회로 사용 (바닥슬래브 사용으로 횟수 조정)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수량산출 착오 계상 조정
 - 황토벽돌 쌓기 수량 조정 : 56.64천매 → 3.78천매
 - 황토벽돌 소운반 수량 조정 : 10.14천매 → 9.54천매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중화장실(5인용) 견적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 단가 25,300천원 → 견적단가 17,178천원
※근거 : 견적단가 적용

자재의 적용단가 조정

- 황토벽돌, 그을림 한식기와, 강화유리, 맑은유리, 수성페인트 등
※근거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주요 착안사항

- 건설공사 건설표준품셈 적용여부
- 조달청 가격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여부

[기계공사]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0 군
- 심사일 : 2008. 12
- 사업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내용 : 슬러지 건조기 10톤/일, 열분해탄화기 2.6톤/일
- 발주유형 : 산업설비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441,959		402,155	39,803	9.0%

주요 심사내용

- 시운전(3개월) 경비 조정
 - 시운전 필수인원인 기계기술자, 전기기능사를 제외한 고급기술자(운전지도) 및 환경 기능사를 적정인원으로 조정
 - ※근거 : 공법 및 현장여건 반영
- 배관설치공사 스테인레스 강관 재료할증률 조정(120%→110%)
 - ※근거 : 기계설비 표준품셈 적용

주요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여부 검토
- 공법 및 현장여건 반영여부 검토

【물품제작】

중앙로 간판문화 개선 사업

사업개요

- 요청기관 : 0 0 시
- 심 사 일 : 2008. 11.
- 사업규모
 - 구매(제조)시기 : '09. 1월
 - 주 요 내 용 : 태양광 간판 144개소 설치
- 발주유형 : 물품제조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909,000		585,782	323,218	35.6%

주요 심사내용

- 고휘도 특수 LED 이중계상 조정
 - 태양광시스템과 LED 제작설치 계상 → LED 제작설치만 계상
 - ※근거 : 전기·정보통신 표준표셈
- 크레인 인력품 및 경비 조정
 - 건설기계운전기사(시간당) : 0.21인 → 0.13인
 - 건설기계조장(시간당) : 0.04인 → 0.03인
 - 구매 차량가격 적용으로 경비조정 : 23,436원 → 18,749원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고휘도 특수 LED 단가 조정
 - LCD(20*20*4구) 단가 조정 : 17,000원 → 4,000원

주요 자재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 적용

- 그라이더날(4") : 12,000원 → **5,500원**
- 직광형 형광램프(FL40, EX-D) : 3,642원 → **2,600원**
- 전자안정기(PL-32BS) : 16,000원 → **11,000원**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태양광 시스템 필수 자재 누락분 반영

- 인버터 누락분 반영 : 0원 → **77,000원**

※근거 : 전기·통신설비 표준품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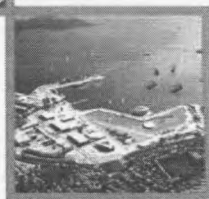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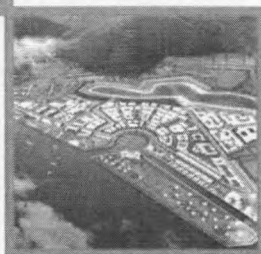
주요 착안사항

- 각종 기자재 중복계상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적용여부
- 건설,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적용여부
- 시방서, 설계도서, 도면과의 일치여부

IV

부

록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0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218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265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전라남도규칙 제2848호(2008. 10.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도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 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 다. 도 의회사무처
 - 라. 도내의 시·군
 - 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바. 도 지방공기업
 - 사.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시·군비사업에 한한다.

1. 공사분야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용역분야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 (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 사업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 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전라남도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약심사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구 분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고
공 사	원가심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한함.
	저가심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 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	
용 역	원가심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	원가심사	· 추정금액 2 천만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 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 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 용역비: 천원	· 금회 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 번호	
(최초)계약금액	천원		(직전) 계약금액	천원	
사업 개요					
설 계 자	업체명		대 표 자		
	책 임 기술자		전화번호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228호(2009. 03. 13)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1-1-1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2-1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2-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3-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1-3-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3-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1-3-5 예정가격 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3-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2-1-1 기초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 예비가격의 산정

2-2-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내에서 7개, $0\% \sim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2-2 복수 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 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2-2-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전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제1절 감정가격

3-1-1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3-1-2 예정가격의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3-2-1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3-3-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3-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4-1-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4-1-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4-1-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다.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7-2-1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제조원가 계산

4-2-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3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

재료 및 4-2-5의 (13)목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 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4.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1. 노무비의 구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3.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 각목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4. 제2호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5. 제3호의 간접노무비는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6. 제5호의 간접노무비는 제4호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4-2-5 경비

1.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 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2-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2-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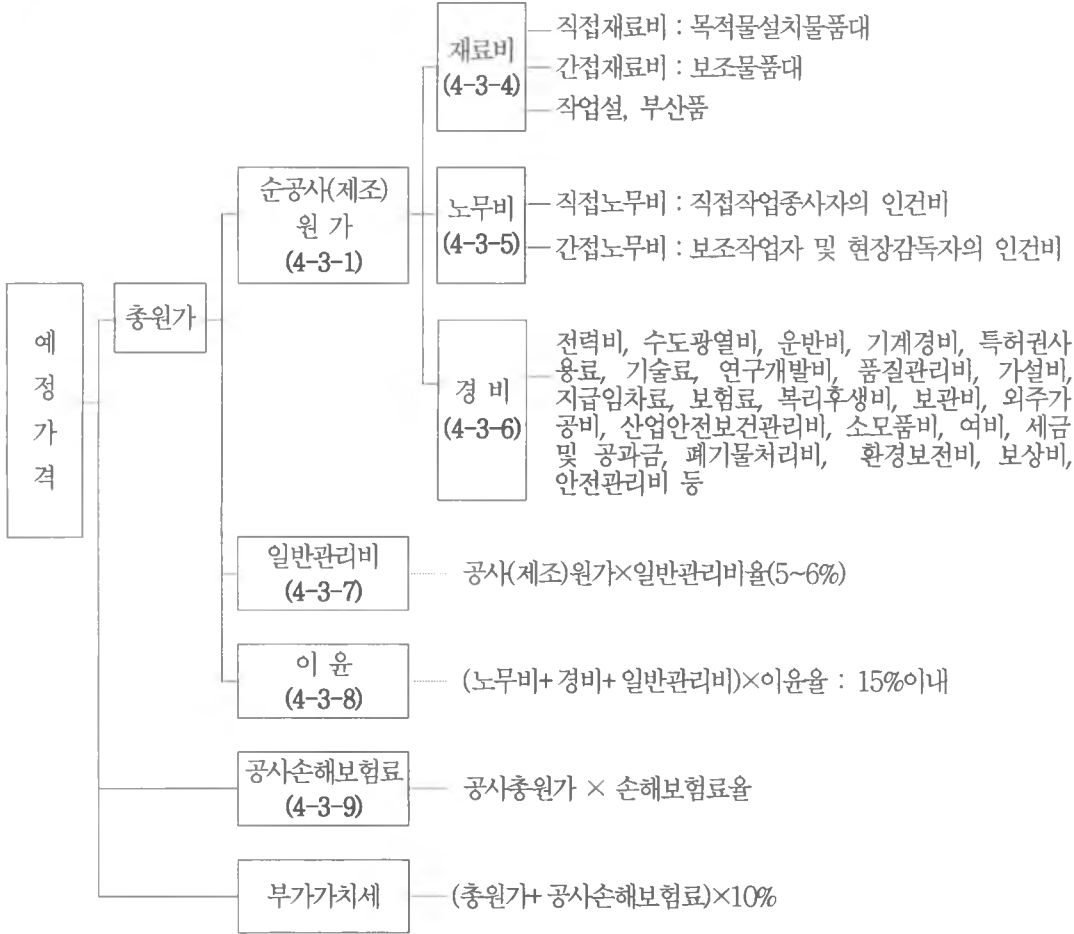
4-3-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3 공사의 원가체계



4-3-4 재료비

1. 재료비의 구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2.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 재료 및 4-3-6 제3호 (13)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3.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등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4.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5.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3-5 노무비

1. 노무비의 내용은 4-1-3과 4-2-4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4-3-6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 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

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3-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4-2-4 제2호 (4)목 및 4-3-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4-3-8 이윤

-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3-9 공사손해보험료

1.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공사총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2.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금액

-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1)목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 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가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 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

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 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4-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4-4-1의 제1호 (2)목 및 (3)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4-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4-4-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제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4-2-5 제3호 (3)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4-6 일반관리비 등

1.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 용역 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호 및 4-4-1 내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8)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환경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 품질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실적 공사비

5-1-1 실적공사비의 개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5-1-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1-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 산정

5-2-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2-2 예정가격의 작성

- 1.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7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2-3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text{직접공사비} = \text{공종별 수량} \times \text{단가}$$

2.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3-6를 준용한다.

3. 제1호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2-4 간접공사비

1.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text{간접공사비} = \text{직접공사비}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비목별 요율}$$

-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2.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2-4의 제3호 및 4-3-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3. 제1호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4. 5-2-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2-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4-2-6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5-2-6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5-2-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

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용역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1-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 1. 계약담당자는 6-1-1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1-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 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

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2-2 원가검토 위탁시 주의사항

- 1.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6-2-1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당해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 의뢰시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1절 특례사항

7-1-1 특례설정 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조·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

7-2-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

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비목					
순 공 사 원 가 비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 3>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531,531원
연구원	월 1,941,142원
연구보조원	월 1,297,590원
보조원	월 973,22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별표 6>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귀하

<별표 7>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공종수량×실적단가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계수×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안전관리비 (규모·종류별)			[직접공사비+관급자재] × 계수×율
	기타법정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율
일 반 관 리 비				[직접+간접] ×율
이 윤				[직접+간접+일반] ×율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 직접공사비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산정

< 별표 8 >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포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계약심사 관련 추천 사이트

추천 사이트	주 소	내 용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노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확인가능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서울시계약 심사동아리	http://cafe.daum.net/geyaksimsa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각종 원가심사 관련 자료
서울외국환 중개(주)	http://www.smbs.biz	주요 통화기준율 확인
환 경 부	http://www.me.go.kr/ →정보 마당→고사·훈령·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대한건설 순환자원협회	http://www.koras.org	품목별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한국원가 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표준품셈 등), 건설기계 경비 산출표 등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업경영분석자료 - 업종별 자기 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익률 등

